# 민간부문 주소DB 전환 가이드

본 가이드는 민간부문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소DB를 새주소(도로명 주소)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서, 민간부문에서 본 가이드를 참고하여 자체 주소DB를 사전 정제하고, 새주소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위해 작성된 내용이며, 향후 필요시 보완된 가이드를 지속적으로 제시할 예정임

문 의 처	행정안전부	지방세분석과	(Tel) 02-2100-3939
		주소전환추진단	(Tel) 02-2100-4052
		주소전환지원센터	(Tel) 02-2100-3939
		도로명주소통합센터	(Tel) 02-2100-2833
	우정사업본부	<b>새주소</b> 우편전략팀	(Tel) 02-2195-1583(4)
		우정사업정보센터	(Tel) 02-450-2248

2010. 4.



# 목 차

I . 일반사항 ······ 2
1. 개요 및 목적 2
2. 적용대상 2
Ⅱ. 도로명주소 개요2
1. 개념 2
2. 부여기준 3
3. 구성 및 표기법 3
Ⅲ. 새주소사업 개요
Ⅳ. 민간부문 주소DB 전환절차 ······· 7
1. 주소DB 확보 및 관리 형태 7
2. 유형별 주소DB 오류 형태 ······ 8
3. 유형별 주소DB 전환 방법 11
4. 유형별 주소DB 전환(예시) ····· 21
Ⅴ. 새주소 전환시 사전 준비사항 26
1. 민간에서 준비해야 할 일 26
2. 중앙부처(행안부 등)에서 지원(예정) 사항 28
Ⅵ. 민간부문 새주소 추진일정 36
1. 새주소 전환 로드맵 36
2. 민간부문 과제별 전환일정 36
「えしつつ
[ <b>참고</b> ] 1 세즈스 저희과려 되고 레고된 20
1. 새주소 전환관련 자료 제공처 ······· 38
2. 도로명주소관련 법령 47

# I. 일반사항

## 1. 개요 및 목적

본 가이드는 도로명주소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법인 등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주소 및 위치관련 전산시스템을 2011.12.31까지 법 제18조에 따라 고시된 도로명주소로 변경하여야 하므로 민간부문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지번주소를 새주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사항을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인 주소전환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가이드는 민간부문 주소DB 전환에 필요한 방안을 제시하여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주소DB 전환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주소DB 전환 절차를 제공한다.

#### 2. 적용대상

본 가이드는 민간부문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정보시스템의 주소 DB에 적용한다.

# Ⅱ. 도로명주소 개요

# 1. 개 념

- 가. [의의] 도로명주소법에 의하여 부여된 도로명, 건물번호 및 상세 주소(상세주소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 의하여 표기하는 주소 (법 제2조제1호)
- 나. [목적] 국제적 주소체계인 도로명방식의 주소제도를 도입하여 국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물류비 절감 등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법 제1조)
- 다. [**효력**] 도로명주소가 부여되어 고지·고시가 완료된 경우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법관계에 있어서의 주소로 함

- 다만, 공법관계에 있는 각종 공부상의 주소가 도로명주소로 변경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주민등록법」상의 주민등록지를 따름(법 제19조제1항)
- 도로명주소가 공법관계의 주소로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2011.12.31까지는 기존의「주민등록법」상의 주민등록지도 공법 관계에 있어서의 주소로 할 수 있음(법 제19조제2항)

# 2. 부여기준

- 가. [도로명] 도로의 『폭』에 따라 도로명의 끝 글자로 사용
  - 대로(40m 또는 8차로 이상)
  - 로(40m~12m, 2~7차로)
  - 길(기타의 도로)
- 나. **[건물번호]** 도로구간별로 기점에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 번호 부여
  - 종점방향('서→동, 남→북')으로 20m간격

# 3. 구성 및 표기법

가. 도로명주소 구성(영 제3조)

\* 예시 : 행정구역명 + 도로명 + 건물번호 + , + 상세주소 + (참고항목)

# 나. 표기법

○ [행정구역명] 시·도+시·군·구(자치구)+읍·면(구·읍·면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충청남도 해안군 남면
-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 인천광역시 서구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 **(도로명)** 부여된 도로명 전체(주된 요소 + 도로별 구분기준)

■ "계양대로", "국채보상로 ", "양잠리걸", "충청대로57걸"

#### ○ (건물번호)

- 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주된번호와 가지번호를 포함하고, 지하에 위치한 건물에는 건물번호 앞에 "지하"를 써서 구분하여 표기
- 건물번호의 "-"는 "의"로 읽고, 건물번호 뒤에는 "번"을 붙여 읽음(시행규칙 제2조)

< M \ \ \ \ \ \

- "401" ⇒ "사백일**번**", "123-34" ⇒ "백이십삼**의** 삼십사**번**", "지하 201" ⇒ "**저하** 이백일**번**"
- **[쉼표]** 상세주소가 있는 경우에는 건물번호와 상세주소 사이에 ","를 표기

# ○ [상세주소]

- 건물의 동, 층, 호가 별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동", "층", "호"로 표시
- 호수에 층수의 의미가 포함된 경우에는 "층"을 생략하며, "동", "호" 대신 "-"로 연결하여 표기하되 읽을 때는 "동", "호"로 읽음

- 8층 803호를 구성요소로 하는 경우 ⇒ 803호("팔백삼호")
- 103동 5층 501호를 구성요소로 하는 경우 ⇒ 103동 501호 또는 103-501("백삼동 오백일호")
- 가동 2층 3호를 구성요소로 하는 경우 ⇒ 가동 2층 3호
- 에이동 8층을 구성요소로 하는 경우 ⇒ 에이동 8층

#### ○ [참고항목]

- 도로명 주소의 끝부분에 동(洞)지역에 있어서는 법정동의 명칭과 공동주택 명칭을 표기(건축물대장상 명칭)
- 읍·면지역에 있어서는 공동주택의 명칭을 각각 괄호 안에 표기 (없는 경우 생략)
- ※ 참고항목으로 새주소의 괄호 안에 기재하는 부분은 법적주소가 아님

#### 

- 법정동만 있는 경우: "(검안동)", "(계산동)", "(종로3가)"
- 공동주택만 있는 경우: "(○○아파트)", "(○○빌라)"
- 법정동/공동주택명이 있는 경우: "(검안동, ○○아파트)", "(병방동, ○○빌라)
- ※ (**새주소 표기방법 예시**) 새주소는 종전 지번주소와 시·군·구(행정 구역 포함), 읍·면까지는 같지만, 리(里)·지번 대신 도로명과 건물번호 사용

구 분	지 번 주 소	새 주 소
단독주택	서울특별시 은평구 <u>갈현동</u>	서울특별시 은평구 <u>갈현로</u>
민축구백	<u>510-18</u>	10(갈현동)
업무용빌딩	서울특별시 종로구 <u>수송동</u>	서울특별시 종로구 <mark>중학천길</mark>
	146-1 ○○빌딩	42(수송동)
공동주택	나이트레시 I 이그 사게도 600	서울특별시 노원구 <u>학마을1길</u>
	서울특별시 노원구 <u>상계동 600</u>	14, ○○동 ○○호(상계동,
	<u> </u>	<u>○○아파트)</u>

※ 참고항목으로 새주소의 괄호 안에 기재하는 부분은 법적주소가 아님

# 《 도로명 부여(예시) 》 서울시 종로구 공평동 88 ⇒ 서울시 종로구 세종길 3



# Ⅲ. 새주소 사업 개요

# 1. 추진배경 및 목적

국민의 생활 편의를 도모하고 물류비절감 등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로명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2012.1.1일부터 민간부문이 보유 하고 있는 주소DB를 새주소 전환 필요

# 2. 추진경위

- 대통령비서실『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에서 결정 및 발표('96.7)
-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제정('06.10)·시행('07.4) ※ 도로명주소의 법적주소화, 재원분담, 주소전환 절차 및 기한 등 규정
- ○『도로명주소법』일부개정('09.4)
  - ※ 정비사업 의무화, 광역도로의 결정권 행안부장관 등에 이관 등
- 공공·민간 새주소 전환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09.10~'10.3)

# 3. 추진범위

# 내주소 시설물 완비범국가적 주소체계 전환내주소 문화 정착·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br/>·도로명판·건물번호판 설치·7대공적장부 주소전환<br/>·민간의 주소전환 지원·새주소 홍보·교육<br/>·새주소 생활화 촉진

4. 추진일정: '12년부터는 새주소만 사용(법률 제19조)



# IV. 민간부문 주소DB 전환절차

# 1. 주소DB 확보 및 관리

#### 〈 민간부문 주소DB 확보 개념도 〉



# 가. 민간 주소DB의 확보 형태

- 환경 및 규모에 따라 주소를 확보
  - 서류상 관리 주소
  - 저장파일(엑셀, 텍스트 등) 주소
  - DBMS 주소 등
- 주소의 표준화 기준 없이 확보
  - 우편번호 기준으로 주소 관리
  - 표준화 절차 없이 텍스트로 주소 관리
  - 비(非)표준화된 DB구조로 주소 관리
- 대부분이 주소의 확인절차를 거치는 경우는 적으며, 필요시 우편 번호를 통해 주소 확인 절차 후 확보

#### 나. 민간 주소DB의 관리 형태

- 개인이 수기로 작성한 주소를 대행자가 텍스트로 전산입력 관리
  - 행정구역 명칭이 약어로 처리되거나 비(非)표준화
  - 띄어쓰기 및 오기가 많음
  - 주소내 특수문자 처리가 존재

**〈예 시〉** 

- 제주도 제주시애월읍 광령 멕 杖
- 제주 서귀포시 중앙동 251++15
- 서울시 서초구 반포본동 상개1블랙 19호
- 의성군 금성면 **19784**
- 개인이 수기 작성한 주소를 우정사업본부에서 제공하는 우편 번호를 활용하여 관리
  - 행정지역 명칭이 상대적으로 표준화 또는 단일화되어 있음
  - 행정구역 변경(분동 또는 합동 등)에 대한 현행화 부분이 안 된 경우가 존재

< M \ \ \ \ \ \ \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홍동 455-3**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05번**지 정곡빌딩 서관1층 교보증권
-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후죽리 458-104번지 4리
- 제주 **북제주군 구좌읍 세화리** 1543-1번지 다연빌라 나동 201호

# 2. 유형에 따른 주소DB 오류

가. 행정지역 명칭이 중복으로 주소정보에 입력된 경우

< 예 시 >

- 제주도 북제주군 한림읍 **동명리 한천동** 908번지
-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제주도 남제주군대정읍안성리 1582-1
- 서울 서초구 **서초3동 경남아너스빌 101동 1005호 서울 서초구 서초3동** 경남아너스빌 101동 1005호

나. 행정지역의 명칭 표기가 오류인 경우
○ "읍면" 행정구역 뒤에 "리"가 표현되어야 하는데, "동"으로 표현
○ 행정구역이 "동"인데 "리"로 표현
< dl XI >
<ul> <li>■ 경북 의성군 의성읍 후죽3동 858-56</li> <li>■ 제주도 제주시한림읍 1 림리 1457-2</li> <li>■ 서울 서초구 양재1동 평천리 180</li> </ul>
다. 주소의 건물명이 중복되어 표현된 경우
<pre>&lt; 예</pre>
<ul> <li>■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한신아파트 201-217리 70번지 신반포4차 아파트 4차 205동 604호</li> <li>■ 서울 서초구 반포1동 삼호가든2차아파트 1~11동 삼호가든4차 라동 802호</li> </ul>
라. 주소의 표기에 필요하지 않는 문자가 들어간 경우
<pre></pre>
<ul> <li>■ ★도서지역★제주 서귀포시 서귀동 423-6 서귀포 뚜레쥬르</li> <li>■ 제주도 제주시 애월읍 광령 멕 杖</li> <li>■ 제일기획 The south 3팀</li> </ul>
마. 지번주소와 도로명이 동시에 복합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경우
< M
<ul> <li>■ 제주 제주시 토두2동 신사수2로 31호 2층</li> <li>■ 서울 서초구 서초동 우먼로 100 서울중앙지방법원 종합민원실</li> </ul>
바. 주소의 건물명이나 지번이 없는 경우
< @ A >
<ul><li>■ 제주 서귀포시 보목동</li><li>■ 경북 의성군 의성읍 후죽4리</li><li>■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li></ul>

사. 주소의 지번표기가 지번형식과 다른 경우
< a < 0 < 0 < 0 < 0 < 0 < 0 < 0 < 0 < 0
<ul> <li>■ 제주 제주 용담이동 338398</li> <li>■ 의성군 금성면 19784</li> <li>■ 서울 서초구 양재2동 366101호</li> </ul>
아. 주소가 사서함으로 표현된 경우
✓ 예 从 > —————————————————————————————————
<ul><li>■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우체국사서함 200번</li><li>■ 제주 서귀포시 서귀동 제병읍 황모리 사서함 8</li></ul>
차. 주소에 지번이 있으나 새주소와 매핑이 안 되는 지번주소
<pre></pre>
<ul> <li>■ 서울시 서초구 점원동 65-32</li> <li>■ 제주도 제주시 이토2동 112-3</li> <li>■ 경북 의성군 단촌면 세촌리 101번지</li> </ul>
카. 주소의 지번이 가지번(블록, 롯트 등) 형태 지번으로 새주소와 매핑 되지 않는 경우
<pre>&lt; 예 시&gt;</pre>
<ul> <li>■ 제주 제주 일도이동 84블럭1노트</li> <li>■ 서울시 서초구 반포본동 상가 1블럭 19호</li> <li>■ 제주도 서귀포시 동홍동 74B 3L</li> </ul>
타. 주소에 행정지역과 건물명으로 표현한 경우(지번 누락)
✓ 예 시 > —————————————————————————————————
<ul> <li>■ 제주 제주시 일도2동 우성2차아파트 205동206호</li> <li>■ 경북 의성군 의성읍 도동리 경신아파트 403호</li> <li>■ 서울 서초구 반포동 강남지하상가 가 4-1호</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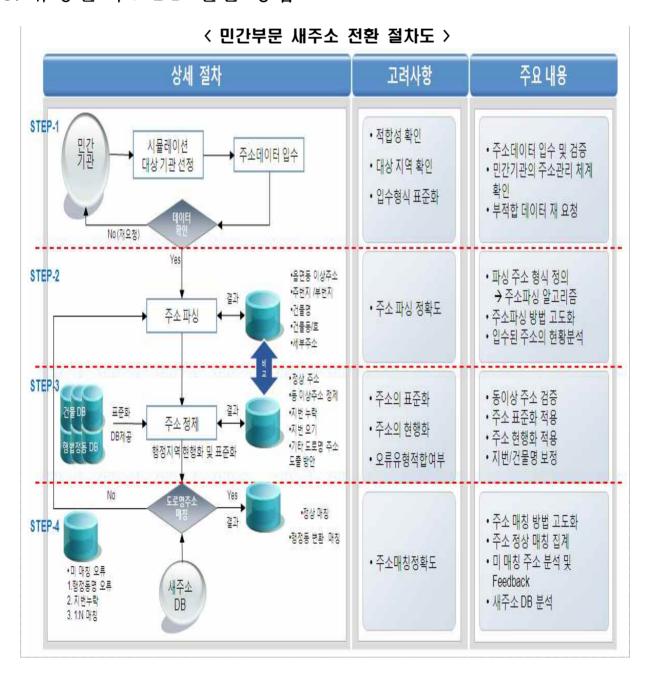
# 파. 주소가 행정동으로 표현된 경우(지번 보유)

○ 지번 정보까지 포함된 "행정동-법정동" 매핑테이블이 없어 행정동 명칭을 법정동 명칭으로 변환이 어려운 경우

#### < **예** 시 >

- 서울 서초구 양재2동 320-6
- 서울 서초구 양재1동 114-8번지
- 서울 서초구 서초3동 1598-7

#### 3. 유형별 주소DB 전환 방법



# 가. (1단계) 주소데이터 전환 대상 선정

- ① 민간에서 자체 관리하고 있는 주소자료(DB, 시스템)를 새주소 전환과의 관련 등을 현황 조사
- ② 보유 주소의 유형(입력/출력/관리 등)의 현황을 조사
- ③ 현황 조사자료를 근거로 도로명 주소자료(DB, 시스템 등) 전환 대상을 선정
- ④ 새주소 전환을 위한 현황분석, 전환방법, 전환절차, 추진일정, 직원교육 등을 포함한 도로명주소 전환 계획을 수립
- ⑤ 새주소 전환환경에 부합되도록 주소관련 자료(텍스트, 엑셀, DBMS 등)의 구조를 변경
- ⑥ 새주소 전환을 위한 프로그램(Application UI) 개발 또는 변경을 위한 기본설계

# 나. (2단계) 주소데이터 파싱¹) 방법 [필요한 경우 참조]

#### 〈 주소 파싱 방법 예시 〉

텍스트 주소

입수주소

서울 서초 방배4등 857-6호 1층 스완카페트 제주 제주시 일도2등 제주 제주시 일도2등 1 5 4 - 1 5 번지 사라봉 성환 아파트 207호 서울 서초구 잠원동 잠원현대@ 1 0 2 - 1 4 0 4

서울 서초구 서초등 1326-17 은성APT 502-1302

경북 의성군 점곡면 동변리 477번지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01월 25일

서울 서초구 잠원동 우성@103-909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산60-1번지 국립증앙도서관 디지탈도서관 북카페

서울 서초구 방배동 TOKYO

서울 서초구 양재2동 306-5 휴먼씨티빌 502호 ★오전9시경배송★

제주 제주시 삼도2동 1241-9번지 동인h+ @ 802호





시도	시군구	읍면동리	산	주번지	부번지	건물명	건물동	상세주소
서울	서초	방배4동		857	6			스완카페트
제주	제주시	일도2동		154	15	사라봉성환 아파트	2동	207호
서울	서초구	잠원동				잠원현대 아파트	102등	1404호
서울	서초구	서초등		1326	17	은성 아파트	502동	1302호
경북	의성군	점곡면 동변리		477		30000 ALL III	10,200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01월 25일
서울	서초구	잠원동				우성 아파트	103동	90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산	60	1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탈도서관 북카페
서울	서초구	방배동						TOKYO
서울	서초구	양재2등		306	5	휴먼씨티빌		502호
제주	제주시	삼2이동		1241	9	동인h+ 아파트		802호

<sup>1)</sup> **파싱(구문분석, parsing)**: 문장을 이루고 있는 구성 성분을 분해하고, 그들 사이의 위계 관계를 분석하여 문장의 구조를 결정하는 것

#### ① 특수문자를 제거

- 주소에서 표기된 특수문자에 대한 값을 제거함(한글과 영문 알파벳, 그 이외의 언어텍스트 제외)
  - ☞ 특히, 주소에서 주/부번지, 통반 혹은 동호수를 구분하기 위해 주로 사용되는 "/", "-" 와 아파트를 표시하기 위한 "@" 등 일부 특수문자를 제외한모든 특수문자들을 제거
  - ☞ (주의) 일부 건물명 등에서는 특수문자를 이름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음
- 두 개 이상의 빈 공간을 하나의 빈공간으로 변경함

〈 예 시 〉

- 제주 서귀포시 서홍동 211-7번지 ★명성어린이집옆집 1층★
  - ⇒ 제주 서귀포시 서홍동 211-7번지 **명성어린이집옆집 1층**
- 서울시서초구 잠원동 한신@ 318동116호
  - ⇒ 서울시서초구 잠원동 한신@ 318동116호
- 북도 의성군 의성읍 후죽1리 728-2번지 (대양복어)
  - ⇒ 북도 의성군 의성읍 후죽1리 728-2번지 대양복어
- 제주 서귀포시 서귀동 587++3
  - ⇒ 제주 서귀포시 서귀동 587 3

# ② 단음절로 구성된 주소를 파싱(텍스트자료의 경우)

○ 주소의 각 속성(필드)들을 단음절 단위로 구분하여 재구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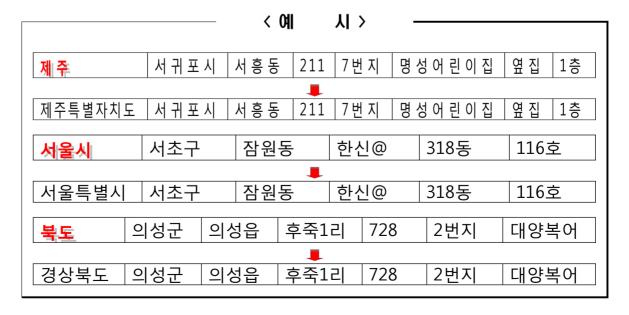
# ③ 복수음절로 구성된 주소를 파싱(텍스트자료의 경우)

- 두개 이상의 음절이 하나의 주소 필드에 속하는 경우, 두개음절 이상에 대해 하나의 속성(필드)으로 부여할 수 있는 규칙을 정함
- 부여된 규칙에 따라 텍스트 주소의 각 속성(필드)들을 단음절 단위로 구분하여 재구성함



## ④ 참조 DB를 통하여 표준주소로 파싱

- 주소의 속성(필드)은 대부분 독립 명사형이므로, 각 주소를 필드별로 구분된 참조DB를 구축함
- 각 필드별로 구분된 참조DB를 통하여 주소를 재구성함



#### ⑤ 우편번호 활용하여 파싱후 참조DB를 통해 표준으로 파싱

○ 우정사업본부에서 제공하는 우편번호를 활용하여 각 주소의 필드를 재구성함

		< भ्र	<b>从</b> > −			
		\ VII	<b>//</b>   /			
■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한신@ 318동116호"의 경우 우편번호가 "137-796"이므로						
137-796	<b>796</b> 서울서초구 잠원동 한신@ 318동 116호					
	■ 우편번호로 파싱					
서울	서초구	잠원동	한신@	318동	116호	
■ 참조DB로 파싱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한신아파트	318동	116호	

- ※ 참고 :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www.koreapost.go.kr) → 우편번호 안내 (우편번호 내려받기) 또는 새주소우편번호 활용
- ⑥ 전문 주소정제 솔류션 파싱
  - 주소 정제를 위한 복잡한 규칙과 참조DB를 포함하여 입력되는 대용량의 주소를 정제하는 기능이 포함된 솔루션을 통해 주소를 재구성하는 방안이 있음
  - ※ (정정) 본 가이드에서 제시한 "솔류션 현황"이 모든 솔류션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며 주소정제에 참고하도록 제시하였으나, 본 가이드에서 제시 한 솔류션보다 더 많은 솔류션이 있다는 의견이 있어 본 가이드에서 관련 내용을 삭제함(민간부문 자체에서 솔류션 현황 파악 필요)

# 다. (3단계) 주소데이터 정제

#### — 〈 정제(Cleansing)의 개념 〉 **—**

정제(Cleansing)의 사전적 의미는 "격식에 맞게 바르고 가지런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갖는다. 즉, 입수된 주소 Text정보를 파싱 과정 통하여 주소형식에 맞게 DB화하고, 확보된 주소DB의 각 값들에 대해서 표준화 및 현행화 과정을 거쳐서 도로명주소DB의 지번주소의 형식으로 보정하는 작업을 의미함

#### 〈 주소데이터 정제 유형 및 절차 〉

시뮬레이션 정제 진행 완료



# ① 파싱 주소를 ⇒ "읍면동 이상 표준화 주소"로 정제

○ 파싱으로 구분된 텍스트 주소의 속성(필드)을 행안부에서 정의한 행정구역 명칭을 참조하여 필드를 변경하여 DB화

#### 〈참 고〉

#### 〈행정기관 및 법정기관 코드 Layout〉

┃행정기관코드│ 시도코드 │ 시군구명 │ 읍면동명 │기관 생성일│ 말소일

☞ 행정구역 분류체계는 <sup>2)</sup>대분류(시・도), <sup>3)</sup>중분류(시・군・구), <sup>4)</sup>소분류(읍・면・동) 3단계로 분류(7자리)

# ☞ (1단계) 시도단위의 행정구역으로 정제

#### 

			민간기관 보유 주소
서울	서초구	잠원동	한신그린아파트 A동 1506호
제주	제주시	노형동 2	2 5 8 2 - 4정든마을 1 0 1 동 5 0 4호
경북	의성군	안계면	용기 1 동 8 2 4 - 2 번지

	-
시도 사례	행정안전부표준명칭
서울시	서울특별시
경북	경상북도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

#### 시도 행정구역 표준화 주소

서울특별시서초구잠원동한신그린아파트A 동 1 5 0 6 호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노형동2 5 8 2 - 4 정든마을 1 0 1 동 5 0 4 호경상북도의성군안계면용기 1 동8 2 4 - 2 번지

<sup>2)</sup> 대분류 : 코드 7자리 중 앞 2자리가 해당됨. 예) 서울특별시(11), 6대 광역시(21~26), 9개 도(31~39)

<sup>3)</sup> **중분류** : 코드 7자리 중 앞 3~5자리가 해당됨 예) 시·구(010~290), 군(310~990) 4) 소분류 : 코드 7자리 중 마지막 2자리가 해당됨 예) 읍(11~19), 면(31~49), 동(51~99)

# ☞ (2단계) 시군구단위의 행정구역으로 정제

#### 시도 표준화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 잠원동 63-2 청구마파트 101동 206호

제주특별자치도 날제주군 남원읍 남원리 2582-4

경상북도 의성 금성면 대리리 18-5

시군구 사례	행정안전부표준명칭
서초	서초구
의성	의성군
남제주군	서귀포시
서귀포	서귀포시

#### 시군구 행정구역 표준화 주소

서울특별시 서출구 잠원동 63-2 청구마파트 101동 206호

제주특별자치도 서궤포시 남원읍 남원리 2582-4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 대리리 18-5

# ☞ (3단계) 읍면동단위의 행정구역으로 정제

< Oil 113

#### 시도, 시군구 표준화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mark>서초1동</mark> 1617-27 그린빌라20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2동 1357-14 창용빌리지 301호

읍면동 사례	행정안전부표준명칭
서초1동	서초동
서초2동	서초동

J

#### 시도, 시군구, 읍면동 행정구역 표준화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등 1617-27 그린빌라20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57-14 창용빌리지 301호

# ☞ (4단계) 리단위의 행정구역으로 정제

#### 

#### 시도, 시군구, 읍면동 표준화 주소

경상북도 의성군 안계면 용기1동 824-2번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교산1레219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성2레 9 2 4 번지

**■** 

리 사례	행정안전부표준명칭
용기1동	용기리
고산1리	고산리
고성2리	고성리

####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행정구역 표준화 주소

경상북도 의성군 안계면 용기러 824-2번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고산레 2 1 9 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9 2 4 번지

# ② 정제된 주소를 ⇒ 현행화

○ 행안부에서 제공 예정인 행정동 변경 이력 정보를 기준으로 과거 명칭을 현재 명칭으로 변경

#### 〈 예 시 〉

#### 민간기관 보유 주소(시도 표준화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북제주군 한경면 저지리 1-1

제주특별자치도 남제주군 남원읍 남원리 2582-4

J

사례데이타	행정안전부표준명칭
북제주군	제주시
남제주군	서귀포시

#### 시군구 행정구역 표준화 데이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1-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 2582-4

#### ③ 현행화된 주소를 ⇒ 행·법정동 주소와 매핑5)

- 행정동과 법정동 매핑 주소테이블을 통해서 행정동 주소를 법정동 주소로 변환
- 행정동과 법정동을 매핑할 테이블이 없는 경우 행정동:법정동의 1:1 경우에 해당되는 주소만 법정동으로 전환
- ☞ 행정동과 법정동이 1:1의 매핑이 아닌 경우, 번지를 고려하여 매핑

#### 〈 예 시 〉

■ 변환예시(행정동:법정동=1:1 경우만 해당함)

행정동으로 표현된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mark>서초1동</mark> 1617-27 그린빌라20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mark>서초2동</mark> 1357-14 창용빌리지 30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mark>서</mark> 초4동유원아파트 103동 701호 1687번지

1

시도명	시군구명	행정동명	법정동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1동	서초동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2동	서초동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4동	서초둥

법정동으로 표현된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mark>서초동</mark> 1617-27 그린빌라20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mark>서초동</mark> 1357-14 창용빌리지 30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mark>서</mark> 초동 유원아파트 103동 701호 1687번지											

#### 〈참 고〉

# **■ 행정동코드(전체) 및 법정동·행정동코드 매핑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 홈페이지 ☞ 주민등록 및 인감 게시판 ☞ "주민등록주소코드 변경내역"의 최신일자로 된 제목을 클릭 ☞ 첨부된 파일 "20090701(날짜)jscode.zip"을 다운로드

#### ■ 다운로드 한 파일의 내용

KiKcd\_H.20090701(날짜): 행정기관코드(전제 행정동코드) KiKcd\_B.20090701(날짜): 법정주소코드(전체 법정동코드)

KiKmix.20090701(날짜): 행정기관코드+법정주소코드(매핑코드)

<sup>5)</sup> 행ㆍ법정동 주소 매핑 : 행정동에 해당되는 법정동을 매핑하여 법정동 주소로 변환한 주소

# 라. (4단계) 도로명주소 전환 매핑

- ① 민간기관이 보유한 지번주소를 파싱 및 정제 단계를 거쳐서 생성 및 정제된 지번주소와 새주소(도로명 주소)의 매핑 테이블을 활용 전환
- ② 매핑된 지번주소를 해당하는 도로명 주소로 전환
  - ☞ (주의) 파싱을 거쳐 정제된 지번주소가 반드시 새주소(도로명 주소)로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
- ③ 미(未)매핑 주소에 대해서는 직접 확인 과정 등의 기초데이터를 정비 후, 처음부터 주소정제 과정을 거쳐 도로명 주소로 전환

#### 

■ 민간기관 보유주소가 도로명주소로 매칭되어진 사례

#### 민간기관 보유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445-14번지 오키즈몰빌딩 1층

제주 제주시 노형동 1292-6 솔누리주택4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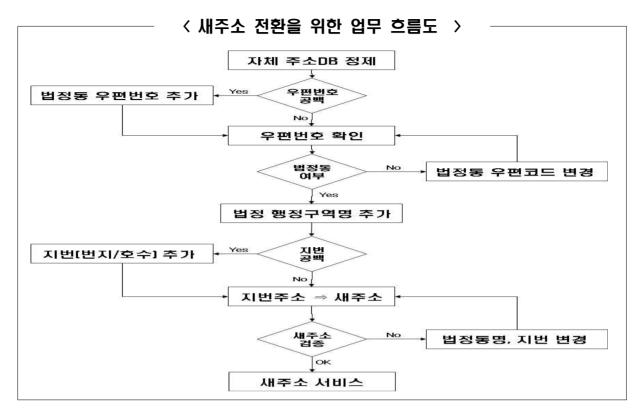
경북 의성군 안계면 용기1리824-3번지 주택

제주도 제주시 아라 1 동 3 9 6 - 3 0 재활의원

서울 서초구 서초1동 1675-11 서초대우아이빌 505호

법정 동코 드	시도	시군 구	읍면 동	리명	산	주번 지	부 번 지	도로 명	건물 본번	건물 부번	건물 명	건물 관리 번호
1165 0108 00	서울특 별시	서 초 구	서 초 동			1445	14	우 면 로 2 길	11		오 키 즈 몰 빌딩	
5011 0122 00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제 주 시	노형 동			1292	6	다 랑 곶길	36		솔 누 리 주 택	401 호
4773 0430 30	경상북 도	의성 군	안 계 면	용기 리		824	3	용 기 9길	24		주택	
5011 0117 00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제 주 시	아 라 일동			396	30	5 1 6 로	3120			
1165 0108 00	서울특 별시	서초 구				1675	11	서 초 대 로 56길	6		서 초 대 우 아 이 빌	5 0 5 호

# 4. 유형별 주소DB 전환(예시)



#### 가. 주소자료 정제 [주소표시 단어 구분]

○ 텍스트로 구성된 주소자료를 파싱기법 등을 활용하여 새주소 전환에 필요한 행정구역 단위의 주소표시 단어로 구분하여 정제 해야 함(IV-3-나, 파싱기법 참조)

시도명 시군구명 읍면동명 지번(번지/호수) 건물명 상세주소

시도명 시군구명 읍면동명 지번(번지/호수) 건물명 상세주소

- 서울 종로구 종로1가동 88
  - ⇒ 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1가동+88
- 서울 종로구 종로2가동 146-1 ○○빌딩
  - ⇒ 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2가동+146-1+○○빌딩
- 서울 노원구 상계1동 600 ○○아파트 ○○동 ○○호
  - ⇒ 서울특별시+노원구+상계1동+600+○○아파트+○○동 ○○호

※ [주의] 민간부문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소형식(텍스트, 엑셀, 파일, DBMS 등)을 행정기관에서 제공하는 표준화된 주소형식으로 변경하여야만 신속한 새주소 전환이 가능함

			〈참 :	a >										
■ 행안부 주민과 제공하는 "행정/법정동" 코드 Layout														
행정코드 시도명 시군구명 행정동명 법정코드 법정동명 생성/변경일														
■ 새주소 안내시스템으로 제공하는 새주소 전환 Layout														
		주 소		도로명		상세주소								
법 정 동 시 도 코 드 명 칭		주 소		도로명		거문사세								
법 정 동 시 도 코 드 명 칭	지 번 시군구 읍 면 명 칭 명	주 소 <sup>면 동</sup> 리 산 칭 리 여부	본번 부번	도로명	주소   하	<mark>건물</mark> 상 세 <mark>명칭</mark> 건물명								

#### 나. 우편번호를 기준으로 주소자료를 전환할 경우

#### 〈전 제 조 건 〉

- 1. "주소자료 정제" 방법으로 주소를 정제하여 전환을 준비를 하여야 함
- 2. 지번 및 우편번호가 누락된 경우에서 확인(개인, 행정기관 등)을 거쳐 추가하여야 함
- 3. 행정기관에서 제공하는 표준화된 주소형식으로 명칭을 변경하여야 함
- **☞ (주의) 민원 등을 대비하여 변경전 자료를 보관 또는 이중체계로 관리**
- < 새주소 전환 준비 Layout(예시) >

우편번호	시도명	시군구명	<mark>읍면동명</mark>	지번(번지/호수)	건물명	상세주소
------	-----	------	-------------------	-----------	-----	------

① 우편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고시된 우편번호DB 등을 활용하여 정제된 주소자료에 우편번호를 추가해야 함(**우본 홈페이지 참조**)

시도명	시군구명 읍면동		명지반	!(번지/호수)	건물명	상세주소
			•			
우편번호	시도명	시군구명	읍면동명	지번(번지/호수	=) 건물명	상세주소

#### < 예 시 >

- 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1가동+88
  - ⇒ 110121+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1가동+88
- 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2가동+146-1+○○빌딩
  - ⇒ 110122+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2가동+146-1+○○빌딩
- 서울특별시+노원구+상계1동+600+○○아파트+○○동 ○○호
  - ⇒ 139201+서울특별시+노원구+상계1동+600+○○마트+○○동 ○○호
- ② 다량배달처, 사섬함 등으로 우편번호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우편번호의 주소를 확인하여 추가 또는 변경해야 함(우본 에서 제공하는 다량배달처 지번DB, 다량배달처 동의어DB, 고시 우편 번호DB 등을 활용)

우편번호 <mark>시도명 시군구명 읍면동명</mark> 지번(번지/호수) <mark>건물명</mark> 상세주소

③ [주의] 지번 누락 또는 건물명이 상이한 경우 확인하여 추가 또는 변경이 필요함(민원 등을 대비하여 변경전 자료를 보관 또는 이중체계의 관리 필요)

- 110160+서울특별시+종로구+**공평동+**\*\* " 또는 "00"
  - ⇒ 110160+서울특별시+종로구+<mark>공평동+88</mark>
- 110714+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1가+" "+교보빌딩
  - ⇒ 110714+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1가+**1번지+교보생명빌딩**
- ④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행정/법정동" 코드 및 "지번추가" 코드를 참조하여 주소자료에 "행정동코드+법정동코드"를 추가 해야 함

우편번호 시도명 시군구명 읍면동명 지번(번지/호수) 건물명 상세주소

우편 번호 시도명 시군 읍면 지 번 건물명 상세주소 **행정 법정** 코드 코드

#### 〈 예 시 〉

- 110714+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1가+1번지+교보생명빌딩
  - ⇒ 110714+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1·2·3·4가동+1번지+교보생명빌딩 +111106150+111102600
- 137897+서울특별시+서초구+양재2동+320-6
  - ⇒ 137897+서울특별시+서초구+양재2동+320-6+**1165065200+1165010200**

#### 〈참 고〉

■ 행안부 주민과 제공하는 "행정/법정동" 코드 Layout

행정코드 <mark>시도명 시군구명 행정동명</mark> 법정코드 <mark>법정동명</mark> 생성/변경일

■ 지번추가 "행정/법정동" 코드 Layout('10.9월 현재로 조사 10월 제공 예정)

행정코드 시도명 시군구명 행정동명 법정코드 법정동명 <mark>시작지번 끝지번</mark>

② 새주소 안내시스템에서 "새주소 전환 매핑테이블"을 내려받아 자체 새주소DB를 구축하여 전환을 시행

#### 〈 새주소 전환 절차 〉

① 새주소 안내시스템(www.juso.do.kr)에 접속 ⇒ ②자료실의 "새주소 매핑테이블"의 최신 버젼 확인 ⇒ ③자료를 내려받는다 ⇒ ④내려받은 자료를 자체 시스템에 새주소 DB를 구축 ⇒ ⑤정제된 주소DB와 새주소 DB를 매핑

# < 새주소 전환 관련 Layoyt(예시) >

 우편번호
 시도명
 시군구명
 읍면동명
 지 번 (번지/호수)
 건물명
 상세
 행정 코드

#### ҈ 매 핑

	지 번 주 소									도로명 주소					상세주소				
법정	기왕	시도	시군구	니 읍 [ I 며	변동	리	산	L E	ᄪᄪ	도로	밀명	도로명	지하	본번	부번	건	물	상기묘	세
고	=	병상	병 승	8 8	싱		<u> </u>	폰빈	구민	고	<u> </u>		<u> </u>			병	<u>8</u>	<u> 긴</u> 돌	8

③ [주의] 새주소 전환이 실패한 경우에는 기존 주소의 법정동코드 또는 지번이 오류인 경우이므로 확인(개인, 행정기관 등)을 거쳐 주소자료(읍면동, 지번)를 변경한 후 처음부터 재시행해야 함

# 다. 소량의 주소자료를 관리하거나 우편번호 전환이 어려운 경우

#### 〈 전 제 조 건 〉

- 1. "주소자료 정제" 방법으로 주소를 정제하여 전환을 준비를 하여야 함
- 2. 지번이 누락된 경우에서 확인(개인, 행정기관 등)을 거쳐 추가하여야 함
- 3. 행정기관에서 제공하는 표준화된 주소형식으로 명칭을 변경하여야 함
- ☞ (주의) 민원 등을 대비하여 변경전 자료를 보관 또는 이중체계로 관리
- < 새주소 전환 형식(예시) >

시도명 시군구	명 <mark>읍면동명</mark>	지번(번지/호수)	건물명	상세주소
---------	---------------------	-----------	-----	------

- ① 소량의 자료(1만건 이하)를 관리하고 있거나 우편번호 변경이 어려운 경우에도 전제조건을 충족한 주소자료로 변경해야 함
- ② 새주소 안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새주소 전환시스템"을 통해 직접 주소전환을 시행

#### 〈 새주소 전환 절차 〉

- ① 보유하고 있는 자료의 건수(1만건 이상 제외)를 파악
- ② 10건 미만인 경우 : 새주소 안내시스템(www.juso.do.kr)에 접속 ⇒ 시스템에서 직접 전환
- ③ 10건 이상 1만건 이하인 경우 : 정제된 자료를 엑셀로 변환 ⇒ 새주소 안내 시스템(www.juso.do.kr)에 접속 ⇒ "새주소 전환시스템"에 첨부자료로 등록 ⇒ 전환

# < 새주소 전환 관련 Layoyt(예시) >

오펴번호	시도명	시구그며	읍면동명	지 번	거므며	상세	행정	법정
구원인호	시노병	시正구경	급인증정	(번지/호수)	건물명	주소	코드	코드

#### ◈ 매핑

	지 번 주 소											도로명 주소						상세주소			<u>:</u>
	법정	동	시도	시급	근구	읍단	변동	21	산	ス	번	도르	2명	СРВ	지하	보버	ㅂ버	건	물	상	세
L	코_	드	명칭	명	칭	명	칭	니	여부	본번	부번	코	드	포도징	여부	논민	구긴	명	칭	건물	·명

③ [주의] 새주소 전환이 실패한 경우에는 기존 주소의 법정동코드 또는 지번이 오류인 경우이므로 확인(개인, 행정기관 등)을 거쳐 주소자료(읍면동, 지번)를 변경한 후 처음부터 재시행해야 함

# V. 새주소 전환시 사전 준비사항

# 1. 민간부문이 준비해야 할 일

- 가. 민간부문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고객 주소를 변경하기 위한 고객의 동의절차 방안 마련 필요
  - 새주소 전환을 위한 고지·고시의 기간('10.7월~11월)에 개인에게 국민편익을 위한 기관(한전, 소방, 경찰 등)에서 활용할 있도록 한정적인 고객동의를 받을 예정임(법률상 민간부문까지 제공토록 하는 동의는 어려움)
  - 민간부문에서는 자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자원(SMS, e-mail, 해드폰 등)이나 고지서 발송시 등을 통해 개별 고객동의를 받아서 주소정보를 변경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함
  - 고객이 개인주소의 변경을 비(非)동의할 경우를 대비하여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고객동의 이벤트를 실시하는 등 개인의 주소정보를 변경할 수 있도록 유도 및 독려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함

# 나. 새주소 전환에 따른 위험관리 계획수립 등 대책 마련 필요

- 새주소 전환전 고객이 지번주소 또는 새주소로 신청할 경우를 대비하여 고객에게 주소안내(지번주소⇔새주소, 새주소⇔지번 주소 설명 등)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새주소 전환시 법적분쟁 소지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고객의 주소를 이중체계(고객(지번)주소+새주소)로 구성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함
- 새주소 전환 이후에도 고객의 민원제기를 대비하여 새주소 전환에 대한 개인동의 여부 및 변경일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는 등 위험 관리 대응방안을 검토해야 함

- 다. [권장] 민간부문의 주소DB(엑셀, 텍스트, 서류 등)를 새주소로 전화하기 위해 표준화된 지번주소의 DB구조로 재구성 필요
  - 자체 관리하고 있는 주소DB상 누락(공백 또는 zeor 등)지번을 확인하여 관련 내용을 추가하여야 함

#### 〈참 고〉

개인이나 해당 관청에 해당 지번확인(주민등록대장, 건축물대장, 지적대장 등) 신청을 하여 추가 또는 변경

- 비(非)표준화(서류, 엑셀, 텍스트, DB 등)로 관리하고 있는 주소는 파싱기법 등을 활용 각 항목을 필드를 분류해야 함(필요시 자료 파싱 숄류션 또는 업체 선정방안 고려)
- 다량우편, 사서함 등으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번 및 건물(또는 위치)을 확인하여 새주소 전환을 위한 매핑 지번 주소(법정동 기준)로 변경해야 함

#### < 민간부문 주소자료 정체 Layout 유형 >

우편번호	시도명	시군구명	읍면동명	지 번 (번지/호수)	건물명	상세 주소	행정 코드	법정 코드
			또	는				

시도명	시군구명	법정동명	지 번 (번지/호수)	건물명	상세 주소
-----	------	------	----------------	-----	----------

정제된 주소자료와 새주소 자료와 매핑하여 주소 전환시 미 (未)매핑 주소들은 대장으로 관리하고, 원인 분석을 통해 매핑이 가능한 지번주소(법정동 기준)를 확인하여 변경해야 함

#### 〈참 고〉

일괄 매핑이 않되는 주소자료는 개인의 확인을 거쳐 새주소 전환하여야 하나, 연락 등 개인을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자체 위험관리계획에 따라 별도 관리 필요

- 라. 소량의 주소를 확보하고 있는 민간기관에서는 일괄 새주소 전환을 지원하는 시스템(행안부의 새주소 전환지원시스템, KT 이사지원시스템 등)을 활용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소량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민간기관에서 새주소 전환을 위해 관련 자료를 텍스트로 변환하여 새주소 안내시스템(www.juso.go.kr)을 통해 일괄 전환을 할 수 있음

#### 〈 새주소 전환 절차 〉

- ① 보유하고 있는 자료의 건수(1만건 이상 제외)를 파악
- ② 10건 미만인 경우 : 새주소 안내시스템(www.juso.do.kr)에 접속 ⇒ 시스템에서 직접 전환
- ③ 10건 이상 1만건 이하인 경우 : 정제된 자료를 엑셀로 변환 ⇒ 새주소 안내 시스템(www.juso.do.kr)에 접속 ⇒ "새주소 전환시스템"에 첨부자료로 등록 ⇒ 전환

# < 새주소 전환 관련 Layoyt(예시) >

우편번호	시도명	시군구명	읍면동명	지 번 (번지/호수)	건물명	상세 주소	행정 코드	법정 코드
			€ 0	ᅢ 핑				
	지병	<u> </u>		도	<u>로명</u> 주소	<u>-</u>	상서	주소
<b>법정동</b> 시5	: 시구구 의	읍면동 기 1	나 <b>지번</b>	도로명 도르	ᅟᆈᄭ하	본번 부번	건 물	상 세

- 민간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KT 이사지원시스템 등)를 활용하여 개인의 주소를 일괄 변경신청 할 수 있음(관련 민간 기관에 문의)
- 2. 중앙부처(행정안전부 등)에서 지원(예정) 사항
  - 가. 민간부문의 새주소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의 행정구역 관련 현황 파악을 위한 전국 일제 조사 등을 통해 행정구역 자료를 정비하여 제공('10.5~10월)

○ 행안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법정동 자료를 기초로 민간부문 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조사하여 구축('10.6~9월)

< 해정 · 법정동 현황 조사 Layout(예정) >

행정	코드		시도명	시군구명		행정동	등명	법	정코드		법정동명
										J	<b>(</b> 추가)
행정 코드	시드	E명	시군구명	행정동명	법	정코드	법정	동명	시작지변	<u>H</u>	끝지번

- 행정/법정동 구조를 개선하여 구축된 자료를 행안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새주소(도로명 주소) 안내시스템(www.juso.go.kr)의자료실에 게시 예정('10.10월중)
- 나. 민간부문의 새주소 전환에 필요한 매핑테이블(지번+새주소)의 정합성 확보 등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제공('10.4월~)
  - 정합성이 확보된 새주소 매핑테이블을 새주소(도로명 주소) 안내 시스템(www.juso.go.kr)의 알림마당의 자료실에 게시(매월 말 기준으로 새주소 매핑DB 제공)
  - 정합성 확보를 위해 새주소 매핑DB 정비 내용
    - 지번, 건물번호 미부여 및 도로명 오류 자료 정비
    - 건물명 및 상세건물명 정비(건축물대장 기준)
    - 지하 건물 여부 확인 및 농지오류 유형 추가 발굴 등
- 다. 소량 주소DB의 새주소 전환을 위한 지원시스템 운영('10.8월~)
  - 새주소 전환을 위해 자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텍스트로 변환 해야 한다(가이드 "V-1-다. 표준화된 지번주소" 내용 참조)
  - 새주소(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www.juso.go.kr)에 접속하여 변환된 자료를 등록후 새주소로 일괄 전환하면 됨

☞ (주의) 시스템의 용량 문제로 1만건 이하의 주소DB만 전환 가능



#### 〈 새주소 자료전환 홈페이지 화면 >

# 라. "주소전환지원센터"를 통한 새주소 전환서비스 지원('10.5월~)

- "주소전환지원센터"를 구축하여 민간부문의 새주소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자료(지침, 가이드, 파일, DB 등) 등을 확보하여 제공할 예정임('10.5월~'12.6월)
  - ☞ 확보된 관련 자료는 새주소(도로명 주소) 안내시스템(www.juso.go.kr)을 통해 제공함

- 기술지원 및 안내 등 민간부문의 새주소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주소전환지원센터"내 HelpDesk를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임 ('10.9월부터)
- "주소전환지원센터"에서 하는 주요업무
  - 전국 새주소 일제 고지를 위한 자료 취합·관리 및 정합성 확보
  - 공적·민간 주소전환용 자료의 통합관리 및 주소전환 진도관리
  - 공적·민간 주소전환 및 사후관리를 위한 공통모듈 개발
  - 7대 핵심공적장부 시스템분석 및 공공·민간 주소전환준비 지원
  - 새주소 고지·고시 및 주소전환 정보제공 등 상담·안내

# 마. 새주소 전환을 위해 홍보(언론, 방송, 교육 등) 예정('10.5월~)

- 고지·고시(방문, 우편, 전자고지 등)를 통해 국민에게 새주소 전환에 대한 일정 및 변경 주소를 알릴 예정임('10.7~11월)
- 언론매체, 교육기관, 콜센터(119, 112, 114 등) 등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한 새주소 전환에 대한 홍보물 제작·배포할 예정임

# 바. 민간부문 『새주소 포럼』을 구성·운영 예정('10.6월~)

- 민간부문의 새주소 전환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한 민간 대표그룹 (금융·유통·통신 및 기타기관)을 선정하여 포럼을 구성·운영할 예정임(대표그룹을 중심으로 산하 포럼을 구성, 의견수렴·제시 필요)
- 새주소 사용 확대를 위한 행정업무 지원과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중간 매개체 역할 수행을 위한 포럼 구성을 통해 민간부문의 요구사항 해결방안을 마련할 예정임

사. 우정사업본부에서 민간부문의 새주소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우편번호 제공 예정 (자세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에 문의)





#### ☞ 현재 우정사업본부에서 제공하는 우편번호 구성현황

- ① 우편번호 DB의 구성
  - (개) 우정사업본부 고시 우편번호 DB(Excel 파일)
  - (나) 다량배달처 지번 DB(Text 파일)
  - (대) 다량배달처 동의어 DB(Text 파일)
  - (라) 행정/법정동 DB(Text 파일)
- ② 우편번호 DB 구조
  - (개) 우정사업본부 고시 우편번호 DB

우편번호	일련번호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도서
시작주번지	시작부번지	끝주번지	끝부번지	다량배달처	시작동	끝동

- \* PK:Primary Key ⇒ 우편번호 + 일련번호
- \* 사서함은 다량배달처 필드에 포함
- \* 자동 압축풀림 방식으로 "c:\\우편번호파일"에 자동으로 파일 생성
- (4) 다량배달처 지번 DB

우편번호	일련번호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도서
시작주번지	시작부번지	끝주번지	끝부번지	다량배달처	시작동	끝동

- \* PK:Primary Key ⇒ 우편번호 + 일련번호
- \* 압축화일(zip)
- (c) 다량배달처 동의어 DB

우편번호 일련번호	대표어순번	대표어	대표어여부
-----------	-------	-----	-------

- \* PK:Primary Key ⇒ 우편번호 + 일련번호
- \* 압축화일(zip)
- (라) 행정법정동 DB

┃ 시도 │ 시군구 │ 행정동코드 │ 행정동명 │ 법정동코드 │ 법정동명
--

\* 압축화일(zip)

- ③ 우정사업본부 고시 우편번호 DB의 구조(mic\_zipcode\_DB.exe)
  - (개) 우정사업본부 고시 우편번호 DB: 고시일\_변경분.xls

지역	현재 우편번호	현재 주소	변경 우편번호	변경주소	비고
----	---------	-------	---------	------	----

\* 지역 : 해당 우편번호의 지역

\* 현재 우편번호 : 고시일 이전의 우편번호

\* 현재 주소 : 고시일 이전의 주소

\* 변경 우편번호 : 고시 이후의 우편번호

\* 변경주소 : 고시 이후의 주소 \* 비고 : 우편번호 변경내역

(ப) 우정사업본부 고시 우편번호DB: 고시일\_우편번호(기존형태).xls

우편번호	일련번호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도서	번지	아파트/건물명	변경일	주소	

\* PK:Primary Key ⇒ 우편번호 + 일련번호

\* 일련번호 : 주소의 고유번호

\* 번지 : 주소의 지번

\* 아파트/건물명 : 아파트/건물 등 다량배달처 명칭

\* 변경일 : 고시일자

- ※ 해당 고시일 기준의 전국의 주소를 우편번호+일련번호로 나타냄 , 번지 및 다량배달처를 한 컬럼에 표시 함으로 가독성 향상 목적
- (다) 우정사업본부 고시 우편번호DB: 고시일\_우편번호(분리형태).xls

우편번호	일련번호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도서	산번지	시작주번지	시작부번지	끝주번지	끝부번지
아파트 건물명	시작동	끝동	변경일	주소	

- \* PK:Primary Key ⇒ 우편번호 + 일련번호
- \* 일련번호 : 주소의 고유번호
- \* 산번지 : 산번지(1)/산번지 아님(0)
- \* 시작주번지/시작부번지/끝주번지/끝부번지 : 주소의 지번
- \* 아파트 건물명 : 아파트/건물 등 다량배달처 명칭
- \* 시작동/끝동 : 아파트 동호수
- \* 변경일: 고시일자
- ※ 해당 고시일 기준의 전국의 주소를 우편번호+일련번호로 나타냄 , 주 소 관련 데이터를 모두 분리함으로 DB 관리의 효율성 증대

#### ④ 우편번호 DB의 일련번호 구조

#### (개) 설명

↑ 우편번호 주소의 건물구분(해당 주소의 건물특성을 구분함) 000

↓ → 일련번호(동일 우편번호에 여러 주소가 있을경우 일련번호를 부여) → 일련번호가 2자리가 넘어갈 경우 사용

#### (내) 일련번호 코드값

- 1 ⇒ 리/번지 (다량배달처가 아닌 지번을 가지는 우편번호)
- 2 ⇒ 아파트
- 3 ⇒ 건물
- 4 ⇒ 일반기업
- 5 ⇒ 교육기관
- 6 ⇒ 사서함
- 7 ⇒ 관공서
- 9 ⇒ 도서지역

#### 〈 참 고 〉

#### |우편번호|일련번호|

a. |100709|007|

서울 중구 중무로1가 서울중앙우체국 ⇒ 해당 일련번호인 007은 건물 코드가 7(관공서) 이며, 100709 우편번호의 일련번호가 9번임을 의미

b. |411704|002|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성저마을7단지아파트 701~712 ⇒ 해당 일련번호인 002은 건물코드가 2(아파트) 이며, 411704 우편번호의 일련 번호가 0번임을 의미

c. |411704|012|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성저마을8단지아파트 801~804 ⇒ 해당 일련번호인 002은 건물코드가 2(아파트) 이며, 411704 우편번호의 일련 번호가 1번임을 의미

d. |411704|022|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성저마을9단지아파트 901~912 ⇒ 해당 일련번호인 002은 건물코드가 2(아파트) 이며, 411704 우편번호의 일련 번호가 2번임을 의미

e. |411704|032|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성저마을10단지아파트 1001~1006 ⇒ 해당 일련번호인 002은 건물코드가 2(아파트) 이며, 411704 우편번호의 일련번호가 3번임을 의미

# VI. 민간부문의 새주소 추진일정

1. 새주소 전환 로드맵



- 2. 민간부문 과제별 전환일정
  - 가. 2010년도 과제별 전환일정
    - 중앙기관(행정안전부 등)



## ○ 민간기관

구 분	4	5	6	5	7	8	g	9	1	0	1	1	12	2
주소DB 위험관리계획 수립				-										
주소DB 전환 동의계획 수립														
주소DB 전환 동의 추진														
조소DB 정제 준비														
조소DB 정제 시험운영														
분야별 포럼 구성·운영														

# 나. 2011년도 과제별 전환일정

○ 중앙기관(행정안전부 등)

구 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새주소 매핑테이블 정비								
소량 주소DB 전환 지원								
주소전환지원센터 운영								
<b>새주소 포럼 운영</b>								
<b>새주소 전환 홍보</b>								
우편번호 정비·제공(우본)								

# ○ 민간기관

구 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주소DB 전환 동의 추진								
조소DB 정제 및 전환 추진								
콜센터 운영(위험관리)								
분야별 포럼 운영								

# 다. 2012년도 이후

○ "주소전환지원센터"를 "주소(도로명)통합센터"로 새주소 관련 자료 및 HelpDesk를 이관하여 지속적으로 지원

## < 참고 1 > - 새주소 전환관련 자료 제공처

①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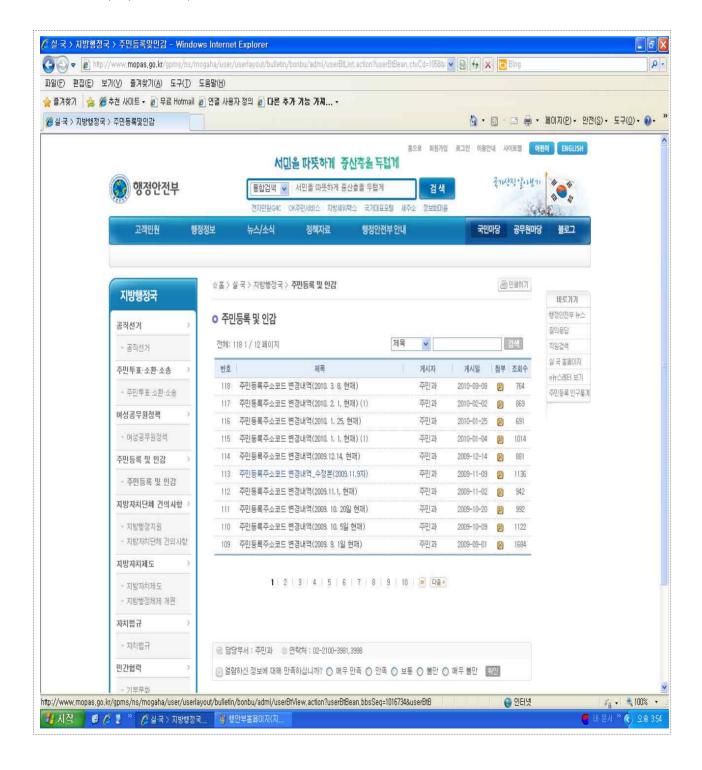
# ① 지방행정구역 요람(위치: 실국홈페이지-지방행정국-지방자치제도)

- (1) 행안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뉴스/소식" 아이콘을 선택함
- (2) "뉴스/소식" 화면에서 "지방행정국"을 선택함
- (3) "지방행정국"에서 "지방자치제도"를 선택하여 해당 관련 자료를 내려받는다



# ② 주민등록주소코드(위치: 실국홈페이지-지방행정국-주민등록및인감)

- (1) 행안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뉴스/소식" 아이콘을 선택함
- (2) "뉴스/소식" 화면에서 "지방행정국"을 선택함
- (3) "지방행정국"에서 "주민등록및인감"을 선택하여 해당 관련 자료를 내려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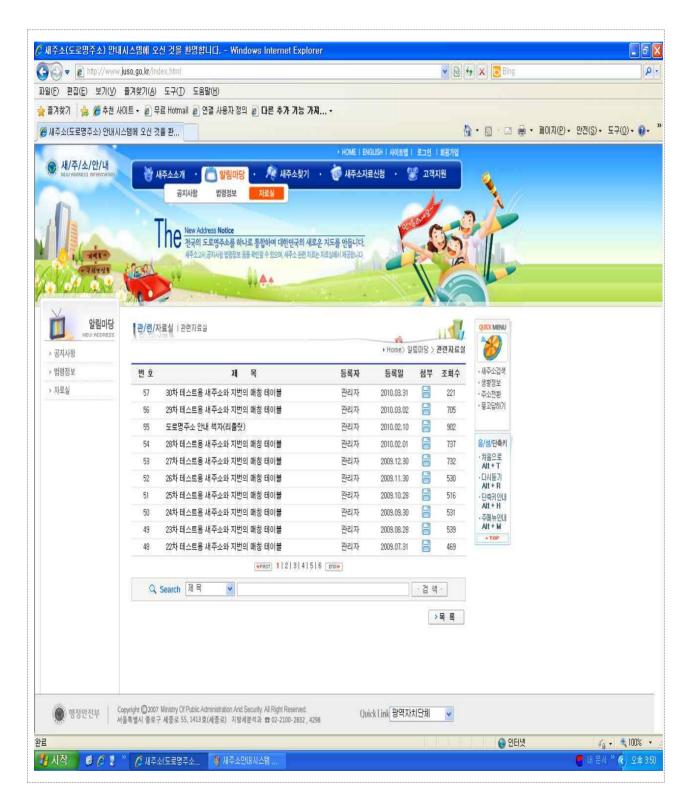


# ② 행정안전부 새주소 안내시스템 홈페이지(www.juso.go.kr)



## ① 새주소 매핑테이블(위치: 알림마당-자료실)

- (1) 새주소 안내시스템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알림마당-자료실" 아이콘을 선택함
- (2) "자료실" 화면에서 해당 관련 자료를 내려받는다



## ② 새주소 전환지원(위치: 새주소자료신청)

- (1) 새주소 안내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새주소자료신청" 아 이콘을 선택함
- (2) "새주소자료신청" 화면에서 주소를 전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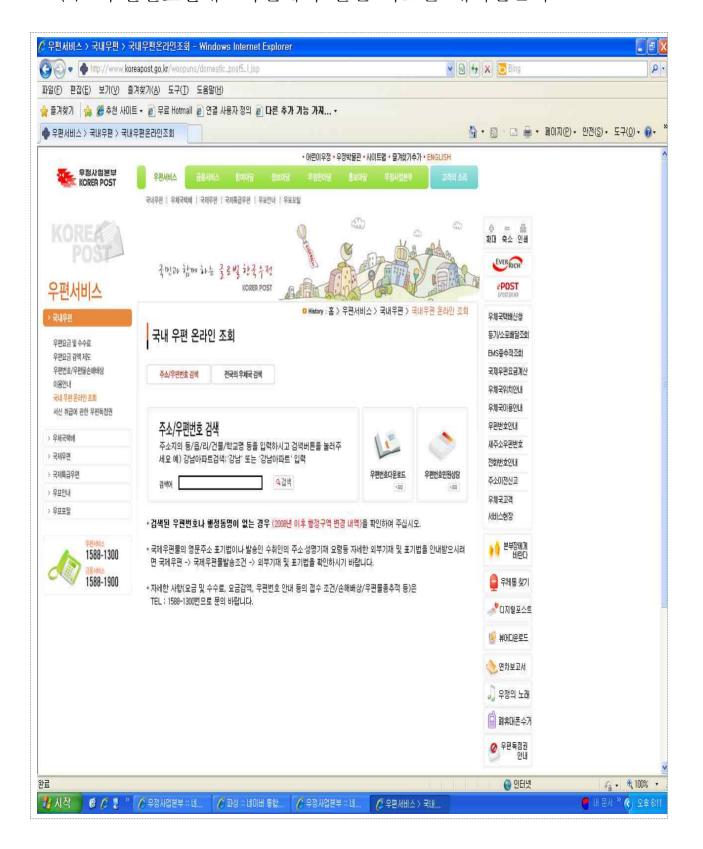


# ③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www.koreapost.go.kr)



## ① 우편번호 자료

- (1) 우편번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우편번호안내" 아이콘을 선택함
- (2) "우편번호안내" 화면에서 관련 자료를 내려받는다



## ② 새주소 우편번호 자료

- (1) 우편번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새주소우편번호" 아이콘을 선택함
- (2) "새주소우편번호" 화면에서 관련 자료를 내려받는다



# 도로명 주소관련 법령

## 도로명주소법

[시행 2009.12.10] [법률 제9774호, 2009. 6, 9,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지방세분석과)02-2100-4053

제1조 (목적) 이 법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에 의한 주소표기에 따른 관련 시설의 설치·유지관리·활용과 도로명주소의 부여·사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물류비 절감 등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6.9>

- 1. "도로명주소"란 이 법에 따라 부여된 도로명, 건물번호 및 상세주소(상세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의하여 표기하는 주소를 말한다.
- 2. "건물등"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과 현실적으로 30일 이상 거주나 정착된 활동에 이용되는 인공 구조물 및 자연적으로 형성된 구조물을 말한다.
- 3. "도로명주소사업"이란 도로와 건물등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부여하고 관련 시설 등을 설치·유지관리·활용하는 사업을 말한다.
- 4. "도로구간"이란 도로명을 부여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도로의 시작지점과 끝지점 사이를 말한다.
- 5. "도로명"이란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기 위하여 도로구간마다 부여한 이름을 말한다.
- 6. "기초번호"란 도로구간의 시작지점부터 끝지점까지 일정한 간격으로 부여된 번호를 말한다.
- 7. "건물번호"란 건물등(둘 이상의 건물등이 현실적으로 하나의 집단을 형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건물 등의 전체를 말한다)마다 부여된 번호를 말한다.
- 8. "상세주소"란 공동주택 등의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동(棟)번호(아라비아 숫자와 문자를 포함한다), 호(號)수(아라비아 숫자와 문자를 포함한다) 또는 층수(아라비아 숫자와 문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9. "도로명주소기본도"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면과 지적공부를 활용하여 도로명 및 건물번호 등이나 그 밖의 자료를 포함하여 작성한 도면을 말한다.
- 10. "도로명주소안내도"란 도로명주소기본도를 이용하여 도로명주소를 안내할 목적으로 작성한 지도를 말한다.
- 11. "도로명주소시설"이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도로명판(지주 등 그 부속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건물번호판, 도로명주소안내판(지역안내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산자료, 전산시설 및 그 밖에 이와관련된 부속 시설물을 말한다.
- 12.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이란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및 지역안내판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4.1]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주소의 적용에 관한 사항에 있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명주소사업 촉진과 도로명주소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명주소사업 추진과 도로명주소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 제5조 (종합계획의 수립·확정) ①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도로명주소사업 추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계획 수립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4.1>
  -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지침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지침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

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가 시·도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4.1>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도 집행계획을 제출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종합계획을 수립·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종합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종합계획의 목표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2. 대상사업 구분과 대상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
- 3. 사업별 내용과 사업량에 관한 사항
- 4. 사업 추진기간 및 연도별 추진 내용에 관한 사항
- 5. 사업비 소요판단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 6. 도로명주소 전환 대상지역과 전환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⑤종합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⑥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종합계획 수립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6조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확정) ①시·도지사는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경우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시장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한다. <개정 2008.2.29>
  -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사업계획에 대하여 검토한 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의 협의를 거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검토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7조 (사업의 시행자) 종합계획에 의한 사업의 시행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제8조 (도로명부여 등) ① 시장등은 도로명주소의 부여·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 1. 기초조사
- 2. 도로구간의 설정·변경·폐지
- 3. 도로명의 부여 · 변경 · 폐지
- 4.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 5. 기초번호의 부여 변경 폐지
- 6. 도로명주소기본도의 작성
- 7. 그 밖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시장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2개 이상의 시·군·자치구에 걸쳐 있는 도로의 경우에는 현황자료 및 시장등의 의견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결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그 신청 을 받은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 해당 시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1. 도로구간의 설정 또는 변경
- 2. 도로명의 부여 또는 변경
- 3. 기초번호의 부여 또는 변경
-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그 신청을 받은 도로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현황자료 및 시·도지사의 의견을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결정

- 을 신청하여야 하며, 그 신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 해당 시·도지사와 시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 각 호의 결정사항에 변경요인이 발생하였거나, 2개 이상의 시·도 또는 2개 이상의 시·군·자치구에 걸쳐 있는 도로를 새롭게 확인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⑤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도로명(도로구간과 기초번호를 포함한다)을 결정하거나 결정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의견을 수렴(시장등은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만을 수렴한다)한 후 제22조의2에 따른 해당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18조에 따라 고시된 도로명주소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 해당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⑥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해당 도로의 현황과 제2항 각 호의 결정사항을 종합하여 매년 말을 기준으로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4.1]
- **제8조의2** (명예도로명) ① 시장등은 제8조에 따라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구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업유치, 국제교류 등만을 목적으로 하는 도로명(이하 "명예도로명"이라 한다)을 추가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
  - ② 도로명주소안내시설과 도로명주소안내도에서는 명예도로명을 도로명과 함께 표시할 수 있다.
  - ③ 명예도로명의 부여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4.1]

- **제8조의3** (도로명주소대장) ① 시장등은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나타내기 위한 도로명주소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1. 도로명 또는 도로명주소의 부여 변경 폐지
  - 2. 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설정ㆍ변경ㆍ폐지
  - 3. 도로명주소에 사용되는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
  - 4.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정비·철거
  - 5. 관련 지번 등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참고사항의 변경
  - 6. 그 밖에 행정안전부렁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도로명주소대장의 서식, 기재 내용·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도로명주소대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처리장치에 의하여 작성・관리되어야 하다.

[본조신설 2009.4.1]

- **제8조의4**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 ① 시장등은 도로명주소를 안내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도로명 주소안내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②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장소와 규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4.1]
- **제9조** (도로명주소안내도 등의 작성·제작·배포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등은 도로명 주소안내도를 작성하여 제작·배포할 수 있다.
  - ② 도로명주소안내도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등이 아닌 자가 신청한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광고를 게재한 경우에는 광고를 신청한 자가 광고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④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이용한 제품을 제작·판매하거나 그 밖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도로명주소안내도의 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 1. 제작대상 지역이 전국 또는 둘 이상 시·도인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 2. 제작대상 지역이 해당 시·도 또는 둘 이상의 시·군·자치구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인 경우: 시·도지사
- 3. 제작대상 지역이 해당 시·군·자치구인 경우: 시장등
- ⑤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도로명주소안내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상으로 제공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명주소의 활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요청하였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 ⑥ 도로명주소안내도 및 이를 이용한 제품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지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9.6.9>
- ⑦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수입은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에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4.1]

**제10조** (원인자 부담) 도시 및 주택재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으로 인하여 설치가 필요한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설치하거나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제11조 (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설치) ①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도로명주소대장에 수록한 정보 등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도로명주소 통합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4.1>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설치, 업무범위, 자료관리·활용 및 위탁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 (자료의 제출요구)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3조** (유지관리의 위탁 등) ①시장등은 도로명주소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4.1>
  - ②시장등은 연 1회 이상 도로명주소시설 등을 일제 조사하여 망실 및 훼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 야 한다. <개정 2009.4.1>
- **제14조** (도로명주소안내판의 광고 <개정 2009.4.1>) ①시장등은 도로명주소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판에 광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4.1>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광고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도로명주소안내판에 장애가 없는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광고사업자의 선정과 광고방법 및 광고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광고비 수입은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 제15조 (도로시설물의 사용) ①시장등은 도로명주소안내시설 중 도로명판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신호등·도로표지판·전선주·가로등·전신주 등이 설치된 지주를 해당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사용 할 수 있다. <개정 2009.4.1>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주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해당지주를 관리하는 관리청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요청을 받은 관리청 또는 관리자는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주를 관리하는 관리청 또는 관리자는 지주의 교체·이설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전에 해당시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6조 (건물등의 소유자·점유자의 의무 <개정 2009.4.1>) ①건물등의 소유자·점유자는 해당 건물등의 사용에 지장이 없는 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명주소시설의 설치 등의 업무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지 못한다. <개정 2009.4.1>
  - ②건물등의 소유자·점유자는 건물등의 벽에 부착된 건물번호판을 관리하여야 하며, 훼손 또는 망실한 때에는 해당시장등에게 재교부 받아 부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물번호판 등이 소유자·점유자의 귀책 사유로 훼손 또는 망실된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 ③ 건물등의 소유자는 건물등의 신축·증축 및 개축 등으로 건물번호를 부여받아야 할 때에는 건물등의 사용승인 전에 시장등으로부터 건물번호를 부여받아 건물번호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에 드는 비용은 건물등의 소유자가 부담한다. <개정 2009.4.1>
- 제17조 (도로명주소사업 지원 조례 제정 <개정 2009.4.1>)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명주소를 부여·관리하고 도로명주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명주소시설의 설치·유지관리·손해배상공제가 입·활용 및 홍보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할 수 있다. <개정 2009.4.1>
- **제18조** (도로명주소의 고지 등) ① 시장등은 도로명(도로구간과 기초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부여, 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명을 고시하여야 한다.
  - ② 시장등은 도로명주소를 부여, 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물등의 소 유자·점유자에게 도로명주소를 고지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 ③ 시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로명주소 등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9조 (도로명주소의 효력) ①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부여된 도로명주소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법관계에 있어서의 주소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는 각종 공부상의 주소가 도로명주소로 변경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주민등록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7.5.11>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명주소가 공법관계의 주소로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2011년 12월 31일 까지는 기존의 「주민등록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민등록지도 공법관계에 있어서의 주소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5.11>
- 제20조 (공법관계의 주소변경) ①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법인 등 공공기관은 비치·관리하고 있는 공법 관계의 각종 공부상 주소 및 위치관련 전산시스템을 제19조제2항의 기한까지 제18조에 따라 고시된 도로명주소로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명주소를 주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주민 은 도로명주소를 이용하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주소를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명주소로 변경할 때에는 전산화가 구축된 경우에는 전산화에 의한 방법으로 일괄수정하고, 전산화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주소변경을 완료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공공기관의 장은 주소변경에 따른 소요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
- **제21조** (도로명주소의 사용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법인 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도로명주소를 표시하거나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명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5.17. 2009.4.1>

- 1.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 건축물대장 등 각종 공부상의 등록기준지 표시 또는 주소 표시
- 2. 각종 인ㆍ허가 등 행정처분시 주소표시
- 3. 공공기관 주소의 위치표시
- 4. 공문서 발송시 주소표시
- 5. 위치안내표시판 제작과 위치표시 및 위치안내
- 6. 인터넷 홈페이지의 위치안내
- 7. 그 밖에 주소 및 위치표시와 관련된 사항

**제22조** (도로명주소 사용자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법인 등은 도로명주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 1.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여 우편물을 다량으로 발송하는 자에 대한 우편요금 등 수수료의 감면
- 2. 우편물을 다량으로 발송하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기존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전환 할 수 있도록 하는 주소검색 전산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 3. 택배회사, 음식점 등 배달 업소와 공공기관에 도로명 안내지도를 비치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지도 를 용도별·규격별로 제작·보급하거나 전산 프로그램의 제공 등 지원
- 4. 버스·지하철 정류장, 광장, 지하도, 시장 등 공공시설의 위치안내판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로 위치표시 지원
- 5. 관광호텔 지도, 교통 지도, 렌터카 지도, 관광안내 지도, 백화점 지도,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등 각종 위치안내 지도에 도로명안내지도 표기지원
- 6. 그 밖에 도로명주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제22조의2 (도로명주소위원회) ① 도로명의 부여·변경, 그 밖에 도로명주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도로명주소위원회를, 시·도에 시·도도로명주소위원회를, 시·군·자치구에 시·군·구도로명주소위원회를 둔다.

- ②중앙도로명주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도로명주소사업의 추진을 위한 종합계획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 2. 도로명주소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
- 3. 도로명주소의 사용을 위한 민간부문 및 공공부문의 활용촉진 등에 관한 사항
- 4. 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
- 5.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도로구간과 기초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부여·변경에 관한 사항
- 6. 도로명주소안내판 및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이용한 광고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③ 시·도도로명주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시 · 도의 집행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2.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의 부여·변경에 관한 사항
- 3.시 · 도의 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운영 · 관리에 관한 사항
- 4. 도로명주소안내판 및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이용한 광고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 ④ 시·군·구도로명주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도로명의 부여 · 변경에 관한 사항
- 2.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위탁에 관한 사항
- 3. 도로명주소안내판 및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이용한 광고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등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각 도로명주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도로명주소위원회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시·도 및 시·군·구 도로명주소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4.1]

- 제23조 (지도감독 등)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도로명주소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4.1>
  - ②행정안전부장관은 도로명주소사업의 세부추진에 관한 지침을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4.1>
- 제24조 (벌칙) ①도로명주소시설을 고의로 훼손 또는 제거한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4.1>
  - ②건물등의 소유자가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4.1>
- **제25조** (과태료) ①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재교부 받고 부착을 하지 아니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시장등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9.4.1>
  - ③ 삭제 <2009.4.1>
  - ④ 삭제 <2009.4.1>
  - ⑤ 삭제

### 부칙 <제9774호, 2009. 6. 9>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③ 도로명주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지적법」에 따른 지적공부와 「측량법」에 따른 도면을"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면과 지적공부를"로 한다.

제9조제6항 중 "「측량법」 제2조제16호"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로 한다.

[4] 부터 <44>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 도로명주소법시행령

제정 2007. 4. 5 대통령령 제19999호 일부개정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41호 일부개정 2008. 4. 4 대통령령 제20764호 일부개정 2009. 1. 6 대통령령 제21250호 일부개정 2009. 7. 1 대통령령 제21656호 일부개정 2010. 4. 7 대통령령 제22110호

제1조(목적) 이 영은 「도로명주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7.1]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4.7>

- 1. "기초번호방식 도로명"이란 제6조제1항제3호의 길에 그 길의 시작지점이 분기(分岐)되는 도로구간 의 도로명, 길이 분기되는 지점의 기초번호 및 "번길"이라는 단어를 차례로 붙여 부여한 도로명을 말한다.
- 2. "일련번호방식 도로명"이란 제6조제1항제3호의 길에 그 길의 시작지점이 분기되는 도로구간의 도로 명, 길이 분기되는 지점의 일련번호(도로구간에 일정한 간격 없이 체계적인 순서에 따라 부여된 번호를 말한다) 및 "길"이라는 단어를 차례로 붙여 부여한 도로명을 말한다.
- 3. "유사도로명"이란 어떤 도로명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도로명 전체를 말한다.
- 4. "동일도로명"이란 도로구간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그 이름이 같은 도로명을 말한다.
- 5. "종속구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간으로서 별도의 도로구간으로 설정하지 않고 그 구간에 접해 있는 주된 도로구간에 포함시킨 구간을 말한다.
  - 가. 막다른 구간
  - 나. 2개의 도로를 연결하는 구간

- 제3조(도로명주소의 구성 및 표기방법 등) ① 도로명주소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표기한다. <개 정 2010.4.7>
  - 1.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이름
  - 2. 시·군·자치구[「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이하 이 항에서 "행정시"라 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이름
  - 3. 행정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말한다) 읍 면의 이름
  - 4. 도로명
  - 5. 건물번호
  - 6. 상세주소(상세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표기한다)
  - 7. 참고항목: 도로명주소의 끝 부분에 괄호를 하고 그 괄호 안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표기할 수 있다.
    - 가. 특별시·광역시와 시(행정시를 포함한다)의 동(洞) 지역에 있는 공동주택이 아닌 건물등: 법정동 (法定洞)의 이름
    - 나. 특별시・광역시와 시(행정시를 포함한다)의 동(洞) 지역에 있는 공동주택: 법정동(法定洞)의 이

름과 건축물대장에 적혀 있는 공동주택의 이름. 이 경우 법정동의 이름과 공동주택의 이름 사이에는 쉼표를 넣어 표기한다.

다. 읍 · 면 지역에 있는 공동주택: 건축물대장에 적혀 있는 공동주택의 이름

- ② 건물번호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며, 건물등이 지하에 있는 경우에는 건물번호 앞에 "지하"를 붙여서 표기한다.
-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물번호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렁으로 정한다.
- ④ 상세주소는 동(棟)번호, 층(層)수, 호(號)수의 순서로 표기한다. 다만, 호수에 층수의 의미가 포함된 경우에는 층수를 표기하지 않을 수 있다.
- ⑤ 건물번호와 상세주소를 구분하기 위하여 건물번호와 상세주소 사이에 쉼표를 넣어 표기한다. [전문개정 2009.7.1]
-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전단에 따라 시·도 집행계획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사업 추진 종합계획 안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법 제5조제4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도로명주소시설 및 도로명주소의 개선에 관한 사항
  -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 3. 도로명주소의 활용 · 홍보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7.1]

- 제5조(기초조사) ①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도로 및 건물등에 대한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초조사에 필요한 도면을 준비하고 현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현지조사방법 등 기초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7.1]

- 제6조(도로구간의 설정 대상) ① 도로별 구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 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동차전용도로 및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달리 정할 수 있다.
  - 1. 대로: 도로의 폭이 40미터 이상이거나 왕복 8차로 이상인 도로
  - 2. 로: 도로의 폭이 12미터 이상 40미터 미만이거나 왕복 2차로 이상 8차로 미만인 도로
  - 3. 길: 대로와 로 외의 도로
  - ② 제1항에 따른 도로에 대해서는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로구간을 설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4.7]

- 제6조의2(도로구간의 설정·변경·폐지 기준 등) ①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도로구간을 설정할 때 정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도로구간의 시작지점 및 끝지점
  - 2. 도로구간의 중심선(도로 폭의 중심을 시작지점부터 끝지점까지 연결한 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 3. 도로구간의 관할 행정구역(시·도 및 시·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 ② 도로구간의 설정 · 변경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도로의 폭·방향·교통흐름 등 도로의 특성을 고려할 것
  - 2. 도로구간의 시작지점 및 끝지점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따를 것

- 가. 강·하천·바다 등의 땅 모양과 땅 위 물체, 시·군·구의 경계를 고려할 것. 다만, 길의 경우에는 그 길과 연결되는 도로 중 그 지역의 중심이 되는 도로를 시작지점이나 끝지점으로 할 수 있다.
- 나. 시작지점부터 끝지점까지 도로가 연결되어 있을 것
- 다. 서쪽과 동쪽을 잇는 도로는 서쪽을 시작지점으로, 동쪽을 끝지점으로 설정하고, 남쪽과 북쪽을 잇는 도로는 남쪽을 시작지점으로, 북쪽을 끝지점으로 설정할 것. 다만, 시작시점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 3. 도로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최대한 길게 설정할 것. 다만, 길에 붙이는 도로명에 숫자나 방위를 나타내는 단어가 들어갈 때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 4. 교차로인 경우 외에는 다른 도로구간과 겹치지 않을 것
- 5. 가급적 직선에 가까울 것
- 6. 일시적인 도로가 아닐 것
- ③ 「도로교통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동차전용도로 및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의 기준과 다르게 도로구간을 설정·변경할 수 있다.
- ④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도로구간을 폐지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1. 도로구간에 속하는 도로 전체가 폐지되어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지 않을 것
- 2. 도로구간의 도로명을 도로명주소로 이용하는 건물등이 없을 것

[본조신설 2009.7.1]

제6조의3(도로구간의 설정 절차) 시장등은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도로구간을 설정하려면 제21조 제1항에 따라 그 도로구간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도로구간에 부여한 도로명과 기초번호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7.1]

- 제6조의4(도로구간의 변경 절차) ① 시장등은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도로구간을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공보와 주민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각종 매체 등(이하 "공보등"이라 한다)에 공고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1. 도로구간의 변경 전·후에 관한 사항(시작지점·끝지점·중심선 및 관할 행정구역을 포함한다)
  - 2. 도로구간의 변경 사유
  - 3. 해당 도로명
  - 4. 의견 제출의 기간 및 방법
  - 5. 도로구간의 변경 절차
  - 6.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여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시·군·구도로명주소위원회(이하 "시·군·구도로명주소위원회"라 한다) 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 2. 해당 도로구간에 속하는 건물번호의 변경 전 · 후에 관한 사항
  - 3. 해당 도로구간의 도로명을 주소로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주소사용 자"라 한다) 중에서 도로구간이 변경되면 도로명주소를 변경하여야 하는 자(이하 "서면동의 대상자 "라 한다)의 현황
    - 가.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 나. 건물등의 점유자로서 19세 이상인 세대주
    - 다. 건물등의 소유자

- 4. 도로구간의 변경에 따른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비용과 그 비용의 조달방법
- 5. 도로구간의 변경에 대한 주민 및 시장등의 의견
- 6.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시장등은 제2항의 심의 결과 도로구간을 변경하기로 한 경우에는 심의를 거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심의 결과와 도로구간을 변경하려는 내용 및 변경 절차(도로구간을 변경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심의 결과에 한정한다)를 공보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④ 시장등은 제3항에 따른 공고를 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서면동의 만료일"이라 한다)까지 서면동의 대상자의 2분의 1 이상으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⑤ 시장등은 제4항에 따라 서면동의 대상자의 2분의 1 이상으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서면동의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도로구간의 변경 내용을 고시하여야 하며, 서면동의 만료일까지 서면동의 대상자 2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서면동의 만료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보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⑥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당 도로구간을 변경할 수 있다.
- 1. 도로의 신설・변경・폐지로 도로구간의 끝지점만 변경하는 경우
- 2. 종속구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3. 기초번호를 변경하지 않으면서 도로구간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
- 4. 도시 및 주택재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그 개발사업 지역과 인접(隣接)한 도로구간 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⑦ 시장등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로구간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21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7.1]

- 제6조의5(도로구간의 폐지 절차) ① 시장등은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도로구간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21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도로구간의 폐지가 고시되면 그 도로구간에 대한 도로명과 기초번호도 같이 폐지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9.7.1]

제6조의6(도로망)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등은 법 제8조제1항제2호, 제2항제1호,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도로구간의 설정·변경·폐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망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0.4.7>

[본조신설 2009.7.1]

- 제7조(도로명의 부여·변경 기준) ① 도로명은 주된 명사에 제6조제1항의 기준에 따라 구분한 "대로", "로", "길"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달리 정한 도로구분을 붙여서 부여·변경한다. 이 경우 주된 명사는 지역적 특성, 역사성, 위치 예측성, 영속성, 지명(地名)과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며, 주된 명사 뒤에 숫자나 방위를 붙일 경우 그 숫자나 방위도 주된 명사의 일부분으로 본다. <개정 2010.4.7>
  - ②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로인 도로구간의 수가 5개 이하인 경우에는 로에 해당하는 도로구간의 도로명의 주된 명사 뒤에 "대로"를 붙일 수 있으며, 시장등이 지형 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로와 길의 기준을 서로 바꾸어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4.7>
  - ③ 같은 시·군·구 내에서는 같은 도로명을 중복하여 부여·변경할 수 없다. 다만, 시·군·구를 합

치거나 관할 구역 경계변경으로 같은 도로명이 중복되었으나 각각의 해당 도로구간의 위치가 행정구 또는 읍·면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4.7>

- ④ 시·군·구가 다른 경우에도 인접하여 연결된 도로가 아니면 해당 도로구간의 반경 5킬로미터 이 내에서는 같은 도로명을 부여할 수 없다.
- ⑤ 제3항 또는 제4항의 경우 도로명의 주된 명사는 같고 주된 명사 뒤에 붙은 "대로", "로", "길"만 달리한 경우도 도로명의 중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⑥ 도로구간의 폐지나 도로명의 폐지로 사용하지 않게 된 도로명은 그 폐지된 날부터 최소한 5년 동안은 도로명으로 다시 사용할 수 없다.
- ⑦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도로명은 변경할 수 없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로명의 부여·변경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 령으로 정한다.

- 제7조의2(도로명의 부여 절차) ① 도시 및 주택재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 또는 건물등의 소유자는 법 제10조 또는 제16조제3항 전단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시설 또는 건물번호판을 설치하기 위하여 시장등에게 도로명의 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등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80일 이내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절차를 거쳐 신청인(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② 도로구간이 2개 이상의 시·군·구 또는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도 제1항 전단에 따른 도로명의 부여 신청을 시장등에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시·도지사에게 도로명의 부여를 신청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시장등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신청을 받아 도로명을 부여하거나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도로명을 부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공보등에 공고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1항 전단에 따른 신청의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 1. 도로의 길이와 폭(제6조제1항의 도로별 구분기준을 포함한다)
  - 2. 도로구간의 시작지점·끝지점·중심선 및 관할 행정구역
  - 3. 기초번호 간의 간격(이하 "기초간격"이라 한다)과 기초번호
  - 4. 도로구간의 도로에 부여할 도로명(이하 "예비도로명"이라 한다)과 그 부여 사유
  - 5. 의견 제출의 기간 및 방법
  - 6. 도로명의 결정 절차
  - 7.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④ 시장등은 제3항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여 시·군·구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1. 도로의 시작지점·끝지점·중심선 및 관할 행정구역에 관한 사항
  - 2. 도로명의 부여에 대한 주민 및 시장등의 의견
  - 3. 도로명의 부여에 따른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비용과 그 비용의 조달방법
  - 4.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⑤ 시장등은 제4항에 따른 심의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21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의 부여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구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도로명을 예비도로명과 다르게 부여하기로 심의한 경우에는 심의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군·구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에서 결정된 도로명을 공보등에 공고하고, 주민의 의견을 새로 수렴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로명의 부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09.7.1]

- **제7조의3(도로명의 변경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소사용자의 5분의 1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그 주소사용자는 시장등에게 도로명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 1. 공동으로 포함된 도로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도로명이나 그 도로명의 유사도로명을 도로명주소로 사용하는 자
  - 2. 기초번호방식 도로명 또는 일련번호방식 도로명을 사용하지 않는 도로구간의 종속구간을 별도의 도로구간으로 하려는 경우: 그 종속구간에 주소가 있는 자
  - 3. 그 밖의 경우: 각각의 도로구간에 주소가 있는 자
  - ② 도로구간이 2개 이상의 시·군·구 또는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도로명의 변경 신청을 시장등에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시·도 지사에게 도로명의 변경을 신청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도로명의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이거나 도로명주소의 활용도와 편리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도로명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공보등에 공고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의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 1. 현재의 도로명
  - 2. 부여하려는 예비도로명
  - 3. 도로명의 변경 사유
  - 4. 해당 도로구간의 시작지점·끝지점·중심선 및 관할 행정구역
  - 5. 도로명의 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자의 범위, 의견 제출의 기간 및 방법
  - 6.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④ 시장등은 제3항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여 시·군·구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1. 도로명의 내력, 현행 도로명의 부여 사유와 도로명의 변경 사유
  - 2. 해당 도로구간에 있는 건물번호의 개수 및 그 도로구간에 주소가 있는 자의 현황
  - 3. 도로명의 변경에 따른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비용과 그 비용의 조달방법
  - 4. 도로명의 변경에 대한 주민 및 시장등의 의견
  - 5. 해당 도로구간의 시작지점 · 끝지점 · 중심선 및 관할 행정구역
  - 6.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⑤ 시장등은 제4항에 따른 심의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의 결과, 변경 내용 및 절차(변경 내용 및 절차는 변경하기로 심의된 경우에 한정한다) 등을 공보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⑥ 제1항의 신청에 따라 공고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⑦ 시장등은 제4항의 심의 결과 도로명을 변경하기로 한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공고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주소사용자의 2분의 1 이상으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아 도로명을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명의 변경을 요구한 자가 주소사용자의 2분의 1 이상이고 새로 사용될 도로명(이하 "후보도로명"이라한다)을 제시한 경우로서 제4항의 심의 결과 현재의 도로명을 후보도로명(2개 이상일 때에는 1순위후보도로명을 말한다)으로 변경하기로 한 경우에는 주소사용자의 2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⑧ 시장등은 제7항 본문에 따라 도로명의 변경에 대한 서면동의를 받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서면 동의를 생략한 경우에는 그 서면동의를 받은 날이나 서면동의를 생략하기로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도로명 변경사항과 변경기준일(변경사항의 고시일을 말한다)을 제21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여야 하며, 제1항의 신청에 따라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⑨ 시장등은 제7항 본문에 따른 주소사용자의 2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결

과를 제5항에 따라 공고한 날부터 40일 이내에 공보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제1항의 신청에 따라 공고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① 시장등은 제4항에 따른 심의 결과가 도로명을 예비도로명 또는 후보도로명이 아닌 다른 도로명으로 변경하는 것일 때에는 제3항의 절차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새로 수렴하여야 한다.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항 본문에 따른 동의 없이 도로명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0.4.7>
- 1. 도로명에 사용된 도로별 구분기준을 제6조제1항에 따른 도로별 구분기준에 적합하도록 변경하는 경우
- 2. 기초번호방식 도로명의 기초번호를, 그 도로의 시작지점이 분기되는 지점의 기초번호와 같게 변경하는 경우
- ②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로명의 변경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7.1]

- 제7조의4(기초번호의 부여·변경 기준) ① 기초번호는 20미터 간격으로 부여한다. 다만, 지역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나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부여할 수 있다.
  - ② 기초번호는 도로의 시작지점에서 끝지점 방향으로 부여하되, 도로의 왼쪽에는 홀수번호를 부여하고, 오른쪽에는 짝수번호를 부여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초번호의 부여 · 변경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7.1]

- 제7조의5(기초번호의 부여·변경 절차) ① 시장등은 도로구간을 설정할 때 기초번호도 부여하여야 하며, 제21조제1항에 따라 도로구간의 설정을 고시할 때 기초번호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 ② 시장등은 도로구간을 변경할 때 기초번호도 변경할 수 있으며, 도로명을 설정·변경할 때, 기초번호도 부여·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1조제1항에 따라 도로구간의 변경을 고시할 때 기초번호의 변경을 함께 고시하여야 하며, 도로명의 부여·변경을 고시할 때 기초번호의 부여·변경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 ③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구간 및 도로명을 변경하지 않고 기초 번호만 변경할 수 있다.
  - 1. 복잡하게 부여된 기초번호를 일련번호순으로 정리하려는 경우
  - 2. 건물등에 부여할 기초번호가 없어 기초간격 및 기초번호를 다시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④ 시장등은 제3항에 따라 기초번호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공보등에 공고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1. 해당 도로구간의 시작지점·끝지점·중심선과 관할 행정구역
  - 2. 변경 전 · 후의 기초간격 및 기초번호
  - 3. 기초번호를 변경하려는 이유
  - 4. 의견 제출의 기간 및 방법
  - 5. 기초번호의 변경 절차
  - 6.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⑤ 시장등은 제4항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여 시·군·구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1. 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 2. 변경하려는 기초번호를 기준으로 한 건물번호의 개수와 그 기초번호를 도로명주소로 사용하는 자의 수
- 3. 기초번호의 변경에 따른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비용과 그 비용의 조달방법
- 4. 기초번호의 변경에 대한 주민 및 시장등의 의견
- 5.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⑥ 시장등은 제5항에 따른 심의 결과 기초번호를 변경하기로 한 경우에는 심의가 끝난 날부터 10일이내에 변경된 기초번호를 제21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여야 하며, 심의 결과 기초번호를 변경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심의가 끝난 날부터 10일이내에 심의 결과를 공보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7.1]

- 제8조(건물번호의 부여·변경 기준) ① 건물번호는 해당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에 접하고 있는 도로구 간의 기초번호를 기준으로 부여·변경한다.
  - ② 지하상가 등 지하에 위치하여 단독으로 운영되는 건물등에 대해서는 주된 출입구에 접하고 있는 도로구간의 기초번호를 기준으로 건물번호를 부여·변경한다. 다만, 주된 출입구가 2개 이상일 때에는 해당 건물등의 중앙에서의 수직투영선과 수직으로 접하는 도로구간의 기초번호나 교차로에 위치한 출입구에 접하고 있는 도로구간의 기초번호를 기준으로 부여·변경한다.
  - ③ 건물번호는 건물등마다 하나씩 부여하되, 둘 이상의 건물등이 하나의 집단을 이루는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등 전체를 하나의 건물군으로 하여 하나의 건물번호를 부여할 수도 있다.
  - 1. 주된 건물등과 이에 부속되어 있는 건물등(창고, 동식물 관련 시설, 화장실 등)이 하나의 건물군을 이루고 있는 경우
  - 2. 담장 등으로 둘러싸여 실제 한 집단으로 구획되어 있고 하나의 건축물대장 또는 하나의 집합건축 물대장의 총괄표제부에 같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
  - 3. 관련 공공문서에 등록되지 않은 건물등이 담장 등으로 둘러싸여 실제 한 집단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물번호의 부여·변경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7.1]

- 제9조(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절차) ① 시장등은 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신청을 받거나 직 권으로 건물번호를 부여하거나 도로구간, 기초번호 또는 주된 출입구 등의 변경에 따라 건물번호를 변경할 때에는 그 내용을 제23조 또는 제24조에 따라 고지·고시하여야 한다.
  - ② 시장등은 건물번호가 부여된 건물등의 멸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확인한 날(건축물대장에 등록된 건물등의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대장이 말소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폐지일로 하여 확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건물번호를 폐지하고 그 사실을 제25조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 제10조(도로명주소기본도의 작성) ① 시장등이 법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작성하는 도로명주소기본도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행정구역의 이름 및 경계
  - 2. 도로선
  - 3. 도로구간의 시작지점 및 끝지점
  - 4. 도로명
  - 5. 기초번호와 기초간격

- 6. 필지 경계와 지번
- 7. 건물등의 위치 및 형태
- 8. 건물번호와 그 주된 출입구
- 9. 관공서 · 학교 등 주요 공공시설물의 이름
- 10. 철도, 호수, 하천, 공원, 다리 등의 배경자료
- 11. 그 밖에 도로명주소를 관리하기 위하여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로명주소기본도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7.1]

## 제11조(2개 이상의 시・군・구 또는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에 대한 도로구간 등의 설정기준 등)

- ① 2개 이상의 시·군·구 또는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에 대하여 법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로구간·도로명·기초번호(이하 "도로구간등"이라 한다)를 설정·부여·변경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도로구간의 경우: 직진성을 유지하면서 같은 방향으로 연속되도록 도로구간을 설정할 것
- 2. 도로명의 경우: 같은 도로구간에는 같은 도로명을 부여할 것
- 3. 기초번호의 경우: 같은 도로구간이면 시·군·구가 달라지더라도 연속해서 기초번호를 부여할 것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기준과 다르게 도로구간등을 설정·부여·변경할 수 있다.
- 1. 도로구간이 길어 기초번호가 5자리 이상이 되는 경우
- 2. 시장등이 정하는 도로구간 및 도로명의 부여방법에 맞게 도로망을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로구간등의 설정·부여·변경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행정 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7.1]

# 제11조의2(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도로에 대한 도로구간등의 설정 절차 등) ① 법 제8 조제2항에 따라 첨부하여야 하는 현황자료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 1. 도로구간 설정의 경우: 도로구간의 시작지점・끝지점・중심선 및 관할 행정구역
- 2. 도로구간 변경의 경우: 변경 전·후의 도로구간의 시작지점·끝지점·중심선 및 관할 행정구역
- 3. 도로명 부여의 경우: 예비도로명 및 그 부여 사유
- 4. 도로명 변경의 경우: 변경 전·후의 도로명과 그 변경 사유, 변경 후 도로명의 부여 사유
- 5. 기초번호 부여의 경우: 기초간격 및 기초번호
- 6. 기초번호 변경의 경우: 변경 전 후의 기초간격 및 기초번호
- ② 시장등으로부터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해당 도로를 관할하는 다른 시·군·구(이하 "인접 시·군·구"라 한다)의 시장등(이하 "인접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의견 제출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도로에 대해 인접 시·군·구가 도로명 변경을 신청한 시·군·구와 다른 도로명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인접 시장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③ 인접 시장등은 제2항 본문에 따른 의견 제출을 요청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검토 의견을 시·도지 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시·도지사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등에 공고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1.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
- 2. 의견 제출의 기간 및 방법
- 3. 도로구간등의 설정 · 부여 · 변경 절차

- ⑤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시·도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구간등의 설정·부여·변경 사항을 결정하여 시장등과 인접 시장등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제21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 ⑥ 시장등은 제7조의2제1항 전단 또는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시·도지사에게 법 제8조제 2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제7조의2 제1항 전단 또는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⑦ 시·도지사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장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등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요청받은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 1. 도로구간등의 설정・부여・변경에 관한 의견 제출
- 2.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 제출
- ⑧ 시·도지사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결정을 하기 전에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공보등에 공고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해당 시·도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 로구간등의 설정·부여·변경 사항을 결정하여 시장등과 인접 시장등에게 통보하며, 그 내용을 제21 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7.1]

- 제11조의3(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에 대한 도로구간등의 설정 절차 등) ① 시·도지사는 시장등으로부터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도로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결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 1. 제11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
  - 2. 해당 시장등의 의견(제2항에 따른 인접 시·도의 시장등의 의견은 제외한다)
  - 3. 시 · 도지사의 의견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도로를 관할하는 다른 시·도(이하 이 조에서 "인접 시·도"라 한다)의 시·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인접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의견 제출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도로에 대해 인접 시·도가 도로명 변경을 신청한 시·도와 다른 도로명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인접 시·도지사의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③ 인접 시·도지사는 제2항 본문에 따른 의견 제출을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접 시장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검토 의견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등에 공고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1. 제11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
  - 2. 의견 제출의 기간 및 방법
  - 3. 도로구간등의 설정·부여·변경 절차
  -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중앙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구간등의 설정·부여·변경 사항을 결정하여 해당시·도지사 및 시장등과 인접 시·도지사 및 인접 시장등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제21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 ⑥ 시장등은 제7조의2제1항 전단 또는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시·도지사에게 법 제8조제 2항에 따른 신청을 하여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제7조의2제1항 전단 또는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에

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요청받은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 1. 도로구간등의 설정・부여・변경에 관한 의견 제출
- 2. 제11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 제출
- ⑧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결정을 하기 전에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4항 각호의 사항을 공보등에 공고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중앙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구간등의 설정·부여·변경 사항을 결정하여 해당 시·도지사 및 시장등과 인접 시·도지사 및 인접시장등에게 통보하며, 그 내용을 제21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7.1]

- 제11조의4(변경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8조제5항 단서에서 "제18조에 따라 고시된 도로명주소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행정 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 1. 법 제18조에 따라 고시된 도로명주소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 2. 제6조의4제6항 각 호에 따른 도로구간의 변경
  - 3. 제7조의3제11항 각 호에 따른 도로명의 변경
  - 4. 제7조의5제3항 각 호에 따른 기초번호만의 변경

[본조신설 2009.7.1]

- 제11조의5(명예도로명의 부여 절차) ① 시장등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구간 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업유치, 국제교류 등만을 목적으로 하는 도로명(이하 이 조에서 "명예도로명"이라 한다)을 부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시·군·구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공보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고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1. 명예도로명을 부여하려는 도로구간의 시작지점 및 끝지점
  - 2. 부여하려는 명예도로명과 그 부여 사유
  - 3. 명예도로명의 사용기간
  - 4. 부여하려는 명예도로명의 적합성에 관한 시장등의 의견
  - 5. 명예도로명의 부여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계획
  - 6.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시장등은 명예도로명을 부여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 1. 그 이름이 명예도로명을 사용될 사람 등의 도덕성, 사회헌신도 및 공익성 등이 우수한지 고려할 것
  - 2. 사용기간은 5년 이내로 할 것
  - 3. 제21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도로명(고시된 후 변경ㆍ폐지된 도로명을 포함한다)이 아닐 것
  - ③ 시장등은 이미 부여된 명예도로명을 계속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명예도로명의 사용기간 만료일 1개월 전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시·군·구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공보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7.1]

- 제12조(도로명주소안내도의 제공 등) ① 법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그 밖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란 도로명주소가 표시된 상태로 도로명주소안내도를 활용하려는 자를 말한다.
  - ②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도의 교부를 요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해당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신청인의 인적사항

- 2. 자료의 이용 목적 및 요청 내용
- ③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등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전산파일 형태로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요구하는 형태로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 1. 신청인이 요구하는 형태의 도로명주소안내도가 없는 경우
- 2. 신청인이 요구하는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전산파일 형태로 제공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드는 경우
- 3. 신청인이 요구하는 형태의 전산파일로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작성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④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도 를 제공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⑤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제공받는 자는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용료를 내야 한다.

- 제12조의2(원인자 부담)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그 개발사업을 하기 위한 인가·허가·승인을 그 인가· 허가·승인권자에게 신청할 때에는 법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도로명주소안내시설 의 설치계획서(이하 "설치계획서"라 한다)를 해당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의 사항은 개발사업시행자가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비(이하 이 조에서 "설치비"라 한다)를 부담하려는 경우 에만 설치계획서에 포함한다.
  - 1. 개발사업시행자에 관한 사항
  - 2. 개발사업의 지역, 내용 및 계획도
  - 3.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계획(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 수량 및 설치 위치를 포함하며, 개발사 업시행자가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예상 설치비와 설치 완료 예정일까지 포함 한다)
  - 4. 도로망 계획도
  - 5. 비용부담계획(비용 납부 예정일을 포함한다)
  - 6. 그 밖에 시장등에 대한 협조 요청사항(도로구간의 설정과 도로명·기초번호·건물번호의 부여 등을 말한다)
  - ② 개발사업의 인가·허가·승인권자는 그 인가·허가·승인을 할 때 개발사업시행자가 시장등에게 설치계획서를 제출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 ③ 시장등은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하기 위한 인가·허가·승인을 신청할 때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제출을 독려할 수 있다.
  - ④ 도로·건물등의 사용승인권자·준공권자는 개발사업시행자가 설치계획서(제5항제1호의 수정계획서 가 있는 경우에는 그 수정계획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을 설치했거나 설치비를 시장등에게 냈는지 확인한 후 그 개발사업에 따라 설치된 도로·건물등에 대한 사용승인·준공을 하여야 한다.
  - ⑤ 시장등은 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설치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1. 시장등이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수정한 경우 그 수정계획서(시장등이 계산한 도로명 주소안내시설의 예상 설치비를 포함한다. 이하 "수정계획서"라 한다)
  - 2. 도로구간의 설정과 도로명ㆍ기초번호ㆍ건물번호의 부여 등에 관한 계획
  - ⑥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적용하여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예상 설치비를 계산하여야 한다.
  - 1. 조달 단가

- 2. 설치계획서를 받기 바로 전에 시장등이 설치한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비
- ⑦ 개발사업시행자는 수정계획서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개발사업시행자는 그 수정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 ⑧ 시장등은 제7항 전단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군·구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제기한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군·구도로명주소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개발사업시행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1. 설치계획서
- 2. 수정계획서
- 3. 개발사업시행자가 제기한 이의신청의 내용
- 4.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⑨ 제8항 전단에 따른 통보를 받은 개발사업시행자는 통보받은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 ① 시장등은 개발사업시행자가 설치비를 내기로 한 경우(제1항제5호의 비용부담계획이 포함된 설치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에는 그 설치계획서에 있는 비용 납부 예정일 10일 전에 그 비용 납부예정일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시설 설치비 납부서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보내야 한다.
- ① 시장등은 설치비를 내기로 한 개발사업시행자가 설치비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 ②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을 직접 설치하기로 한 개발사업시행자(제1항제3호 중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예상 설치비와 설치 완료 예정일이 포함된 설치계획서를 제출한 자를 말한다)는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를 끝낸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시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시장등은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을 직접 설치하기로 한 개발사업시행자가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 완료 예정일까지 그 시설의 설치를 끝내지 않은 경우에는 설치 예정 완료일부터 1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도로명주소안내시설 설치비 납부서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설치비는 수 정계획서에 적힌 예상 설치비(제7항 전단에 따라 이의제기를 한 경우에는 제8항의 심의 결과에 따른 예상 설치비를 말한다)에서 개발사업시행자가 설치 완료 예정일까지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들인 비용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④ 제13항 전단에 따라 납부서를 받은 개발사업시행자는 그 납부기한까지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를 끝내거나 납부서에 기재된 설치비를 시장등에게 내야 한다.
- ⑤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을 직접 설치하여 야 한다.
- 1. 시장등이 제10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도로명주소안내시설 설치비 납부서를 보낸 경우
- 2. 개발사업시행자가 제13항 전단에 따라 납부서를 받고도 그 납부기한까지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를 끝내지 않은 경우

[본조신설 2009.7.1]

제13조(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설치·운영)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에는 중앙 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이하 "중앙통합센터"라 한다)를, 시·도에는 시·도 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이하 "시·도통합센터"라 한다)를 각각 설치·운영한다.

[전문개정 2009.7.1]

제14조(도로명주소 통합센터 정보의 공유)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명주소 통합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상호 공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5조(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업무범위) ①중앙통합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종합발전계획 수립
- 2. 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데이터표준화
- 3. 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운영지침 작성
- 4. 도로명주소 통합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에 대한 사용자 교육
- 5. 도로명주소의 정보분석 및 통계관리
- 6. 도로명주소 자료의 수집·가공·관리·제공 및 이용안내
- 7. 시 · 도간 도로명주소 전자지도의 경계 접합
- 8. 사용자 권한 및 보안관리
- 9. 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운영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관리
- 10. 시장등의 기본도 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관리
- 11. 그 밖에 통합센터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②시·도통합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관할지역의 도로명주소 자료의 취합 및 관리
- 2. 관할지역의 시・군・구간 도로명주소 전자지도의 경계 접합
- 3. 관할지역의 도로명주소 정보분석 및 통계관리
- 4. 관할지역의 도로명주소 자료의 수집·가공·관리·제공 및 사용안내
- 5. 그 밖에 시·도통합센터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제16조(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활용 촉진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도로명주소 통합센터 전산자료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로명주소 관련 자료를 가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도로명주소 관련 자료에 오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자료 제공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09.7.1]

- 제17조(유지관리의 위탁 등) 시장등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 중에서 위탁대상자를 선정한다. [전문개정 2009.7.1]
- **제18조(광고)** ① 법 제9조제2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도 및 도로명주소안내판에 게재할 수 있는 광고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도로명주소안내도의 경우: 소유자의 이름, 주소, 업소명, 전화번호, 자기의 상표 또는 상징 도안 등
  - 2. 도로명주소안내판의 경우: 업소의 이름 또는 상징 도안
  -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등은 광고를 게재한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제작·설치·배포하
  - 기 전에, 시장등은 광고를 게재한 도로명주소안내판을 제작·설치·배포하기 전에 미리 그 광고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③ 도로명주소안내판을 이용한 광고는 도로명주소안내판에 붙인 안내도에만 게재하여야 한다.
  - ④ 광고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공고 및 광고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제19조(건물번호판의 재교부 신청 등) ① 법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라 건물번호판을 재교부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에게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교부 신청을 받은 시장등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건물번호판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 ② 법 제16조제3항 전단에 따라 건물번호를 부여받으려는 건물등의 소유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에게 건물번호의 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건물번호판의 교부를 함께 신청할 수 있다.
  - ③ 시장등은 제2항 전단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도로명을 새로 부여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의 부여·변경을 고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14일 이내에 건물번호와 제2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고시 사항 중 해당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의 부여·변경을 고시하여야 하며, 제2항 후단에 따라 건물번호판의 교부 신청도 받은 경우에는 건물번호판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④ 건물등의 소유자는 건물번호판을 제1항 후단에 따라 재교부받거나 제3항에 따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에 건물번호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후단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교부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물번호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⑤ 제1항 후단 또는 제3항에 따라 시장등이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제작 비용의 산정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 제20조(외국인투자 유치 촉진 등을 위한 지원 특례) 국가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 여건 개선 등을 위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률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명주소사업과 도로명주소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7.30>
  [전문개정 2009.7.1]
- 제21조(도로구간등의 고시) ① 법 제18조제1항, 이 영 제11조의2제5항 및 제11조의3제5항에 따라 도로 구간등의 부여·변경·폐지를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여 공보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 1. 도로명ㆍ기초번호의 부여를 수반하는 도로구간의 설정을 고시하는 경우
    - 가. 제7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 나. 도로명과 그 부여 사유
    - 다. 유사도로명과 동일도로명
    - 라. 도로구간등의 변경 요건 및 절차
    - 마. 도로구간등의 설정 부여 고시일
    - 바.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2. 도로명ㆍ기초번호의 변경을 수반하는 도로구간의 변경을 고시하는 경우
    - 가. 변경 전 후의 제7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 나. 변경 전 · 후의 도로명과 그 부여 사유
    - 다. 변경 전ㆍ후의 유사도로명과 동일도로명
    - 라. 도로구간등의 변경 요건 및 절차
    - 마. 도로구간등의 변경 고시일
    - 바.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3. 도로명만의 변경을 고시하는 경우
    - 가. 제7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 나. 변경 전 후의 도로명과 그 부여 사유
- 다. 새로운 도로명에 의한 유사도로명과 동일도로명
- 라. 도로명의 변경 요건 및 절차
- 마. 도로명의 변경 고시일
- 바.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4. 도로구간만의 변경을 고시하는 경우
  - 가. 변경 전 후의 제7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 나. 도로명과 그 부여 사유
  - 다. 유사도로명과 동일도로명
  - 라. 도로구간 변경 고시일
  - 마.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5. 기초번호만의 변경을 고시하는 경우
  - 가. 제7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 나. 변경 전 · 후의 기초간격 및 기초번호
  - 다. 도로명과 그 부여 사유
  - 라. 유사도로명과 동일도로명
  - 마. 기초번호 변경 고시일
  - 바,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6. 도로명ㆍ기초번호의 폐지를 수반하는 도로구간의 폐지를 고시하는 경우
  - 가. 제7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
  - 나. 폐지 전 도로명과 그 폐지 사유
  - 다. 도로구간 폐지 고시일
  - 라.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라 고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고시 예정일 5일 전에 시장등은 시·도지사와 행정안전부장 관이 정하는 자에게, 시·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자에게 고시 예정 사실과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시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고시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로명주소를 부여· 변경·폐지하고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을 설치·변경·철거하여야 한다.

- 제22조(도로명주소의 고지·고시 사항) ① 시장등이 직권으로 도로명주소를 부여할 때 법 제18조제2 항에 따라 고지·고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종전의 주소
  - 2. 새로 부여하는 도로명주소
  - 3. 도로명주소의 부여일(고시인 경우에는 고시일을 말한다)과 그 부여 사유
  - 4. 도로명주소에 사용된 도로명의 고시일과 그 도로명의 부여 사유
  - 5. 고지받은 사항에 대한 정정요청 절차 및 기간(10일 이상으로 한다)에 관한 사항(고시인 경우에는 생략한다)
  - 6. 이미 부여된 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변경 요건 및 절차
  - 7. 공법관계에 사용되는 각종 공공문서상의 주소 전환계획
  - 8.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시장등이 신청을 받아 도로명주소를 부여할 때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고지·고시할 사항은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으로 한다.
  - ③ 시장등이 직권으로 도로명주소를 변경할 때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고지 · 고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도로명주소의 변경일(고시인 경우에는 변경 고시일을 말한다)과 그 변경 사유
- 2. 제1항제1호·제2호·제5호·제7호 및 제8호의 사항
- ④ 시장등이 신청을 받아 도로명주소를 변경할 때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고지·고시할 사항은 제1항 제1호·제2호·제8호 및 제3항제1호의 사항으로 한다.
- ⑤ 시장등이 도로명주소를 폐지할 때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고지·고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해당 도로명주소
- 2. 도로명주소의 폐지일과 그 폐지 사유
- 3.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9.7.1]

- 제23조(직권에 의한 도로명주소 부여·변경의 고지·고시 절차) ① 시장등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한 도로명주소의 부여·변경을 고지할 때에는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의 설치를 마친 날(일 정한 지역을 단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 전체에 대하여 설치를 마친 날을 말한다)부터 90일이내에 직접 방문하여 고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 고지를 할 수 있다.
  - 1. 고지 대상자가 해당 시·군·구가 아닌 곳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 2. 고지 대상자를 두 번 이상 방문하였으나 고지 대상자를 만나지 못하여 방문 고지를 하지 못한 경
  - ② 시장등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우편물을 통한 서면 고지를 하였음에도 고지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하여야 한다.
  - ③ 시장등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도로명주소의 고시 예정일 5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자와 해당 시·도지사에게 고시 예정 사실과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시장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의 부여·변경 사실이 고지 대상자에게 고지됐음이 확인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보등을 이용하여 제22조제1항 각 호 또는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 ⑤ 시장등은 도로명주소의 변경을 고시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관리하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은 제외한다)·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변경된 도로명주소에 따라 정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등은 주민등록의 변경요청을 한 사실을 해당 주소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⑥ 도로명주소의 부여·변경을 전국적으로 동시에 고지·고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 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고지·고시하여야 한 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로명주소 부여·변경의 고지·고시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9.7.1]

- 제24조(신청에 의한 도로명주소 부여·변경의 고지·고시 절차) ① 시장등은 신청을 받아 한 도로명주소의 부여·변경을 고지·고시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고, 해당 시·군·구의 홈페이지 등에 제22조제2항 또는 제4항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 ② 신청을 받아 도로명주소를 부여 변경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23조제3항 제5항을 준용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로명주소 부여·변경의 고지·고시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 안전부장관이 정한다.

#### [본조신설 2009.7.1]

- 제25조(도로명주소 폐지의 고지·고시) ① 시장등은 도로명주소를 폐지할 때에는 고지를 생략하되, 필 요한 경우에는 건물등의 소유자·점유자에게 우편으로 고지할 수 있다.
  - ② 시장등은 도로명주소의 폐지를 고시할 때에는 공보등을 이용하여 제22조제5항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로명주소 폐지의 고지·고시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7.1]

- 제26조(정보의 공유) ① 시장등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도로구간과 기초번호를 포함한다)을 변경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도로구간 주소사용자의 거주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등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비치·관리하고 있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公簿)와 위치 관련 전산시스템에 있는 주소를 고시된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법인 등 공공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 1. 도로명주소의 표기방법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구역의 변경, 도로의 개설·변경·폐지, 건물등의 신축·증축·개축·멸실 등 도로명주소와 관련된 자료
  - 2. 제10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주소기본도의 내용과 관련된 자료
  - ③ 시·군·구에서 행정구역, 도로 또는 건물등에 관한 인가·허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그 업무와 관련하여 도로명주소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구역의 변경, 도로의 개설·변경·폐지 또는 건물등의 신축·증축·개축·멸실 등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도로명주소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9.7.1]

- 제27조(중앙도로명주소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도로명주소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1. 행정안전부의 도로명주소업무를 수행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 2. 도로명주소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 3. 기획재정부, 법무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또는 그 밖에 중앙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사람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추천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28조(중앙위원회의 회의) ①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소집을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 ③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중앙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⑤ 중앙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중앙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09.7.1]
- 제29조(주소전환추진단의 구성·운영) ① 법 제4조에 따라 도로명주소로의 전환을 지원하고 도로명주소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주소전환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한시적으로 둘수 있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추진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및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국가기관이나 지방 자치단체 외의 기관·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4.7]

### 부칙 <제19999호, 2007.4.5>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다른 법령의 폐지)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에관한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 ③(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설치를 완료한 지역의 고지·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도로명 판과 건물번호판의 설치를 완료한 지역의 시장등은 법 제18조에 따른 고지·고시는 법률 제8027호 도로 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일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8.4.4>
- ④(도로명자료의 사용료에 관한 특례)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로명주소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도로명자료의 사용료를 무상으로 할 수 있다.

#### 부칙 <제20741호,2008.2.29>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9> 까지 생략

<40>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5조제2항, 제6조제6항, 제7조제6항, 제8조제4항, 제11조, 제12조제3항, 제14조, 제19조제1항·제2항 및 제27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항·제3항제4호, 제6조제5항, 제7조제3항 본문, 제9조제4항·제5항, 제12조제3항·제4항, 제14조 전단, 제16조제1항·제2항, 제21조제3항, 제22조제1항·제4항제1호, 제23조제6호, 제24조제2항, 제25조제6항 및 제26조제6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 및 제22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22조제4항제2호 중 "법무부·정보통신부·건설교통부·기획예산처·금융감독위원회"를 "기획재정부·법무부· 지식경제부·국토해양부·금융위원회"로 한다.

<41> 부터 <105> 까지 생략

#### 부칙 <제20764호.2008.4.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도로명 변경에 관한 특례 등) ① 2008년 10월 4일까지 도로명주소의 고시가 있는 도로구간의 주소사용자가 제7조제6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도로명의 변경을 요구하여 시장등이 도로명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7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도로명을 고시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것으로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도로명판의 설치가 완료된 경우로서 제7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장등이

도로명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에 도로명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제3조 (법 시행 이전에 추진된 도로명사업에 관한 특례) ① 시장등은 2011년 6월 30일까지 법률 제8027호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에 의하여 행하여 진 것으로 보는 도로명사업 추진지역(이하 "법 시행 전 사업추진지역"이라 한다)과 같은 법에 따라 새로 추진하는 도로 명사업 추진지역(이하 "법 시행 후 사업추진지역"이라 한다) 사이의 도로명주소 부여체계의 불일치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로명주소 정비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명 및 도로명주소의 변경에 관한 제7조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도로명 및 도로명주소를 새로 부여하는 것으로 보아 이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도로명주소 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로명주소의 정비요령, 법 시행 전 사업추진지역과 법 시행 후 사업추진지역 사이의 불일치 해소 범위 등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에게 통보할 수 있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침을 통보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도로명주소 정비사업의 촉진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설치를 완료한 지역의 고지·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2007년 4월 5일 이후부터 이 영 시행일 전까지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의 설치를 완료한 지역의 시장등은 제21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8년 10월 4일까지 고지·고시를 하여야 한다.

### □□ 부칙 <제21250호,2009.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1602호,2009.7.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도로명주소 정비사업 등에 관한 특례) ① 시장등은 법률 제9569호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정비대상 지역의 도로명주소가 제6조·제6조의2·제7조·제7조의4 또는 제8조(제6조제2항제3호의 길에 해당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제6조의2제2항제2호다목과 제7조의4는 제외한다)의 개정규정과 다르게 부여된 경우에는 이를 이 영에 적합하게 정비하여야 한다. 다만, 2011년 12월 31일까지 건물등의 철거가 예상되는 개발사업지역 등의 도로명주소는 정비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 외에 법률 제9569호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해당 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정비하기로 심의한 경우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당 시·도지사로부터 정비하도록 통보받은 경우에는 해당 도로명주소를 정비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도로구간등 및 도로명주소의 변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도로구간등 및 도로명주소를 새로 설정·부여하는 것으로 보아 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신청, 건물번호 의 부여 신청, 건물번호판의 설치의무 등에 관한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정비사업에 의하여 해당 도로명을 고시하는 날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정비하지 않기로 한 도로구간등에 대해서는 도로 명주소의 고지·고시 기한에 관한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 지역의 정비대상 도로명주소를 고지·고시할 때 함께 고지·고시할 수 있다.

- 제3조(도로명의 변경 제한기간에 관한 특례) 제7조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2011년 6월 30일까지 도로명을 변경할 수 있다.
- 제4조(도로명주소안내도의 사용료에 관한 특례)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등은 제12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도로명주소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015년 12월 31일까지 도로명주소 안내도의 사용료를 받지 않을 수 있다.
- 제5조(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고지·고시되었거나 고지·고시된 것으로 보는 도로구간등과 도로명주소는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지·고시된 것으로 본다. 다만, 법률 제9569호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른 정비대상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시·도새주소위원회와 시·군·구새주소위원회는 해당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법 제22조의2에 따른 시·도도로명주소위원회와 시·군·구도로명주 소위원회로 본다.

부칙(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656호, 2009.7.30>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 ⑥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0조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 (7) 부터 (15) 까지 생략

#### 부칙 <제22110호, 2010. 4. 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